

제10기 동북아역사재단
역사 아카데미

한국과 일본,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일시 2012.5.10(목)~6.30(토)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목 차

- 05 10기 역사 아카데미 안내

- 07 1강(5.10)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이야기,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
이 원 덕(국민대학교)

- 25 2강(5.17) 일본군위안소제도의 실태 및 주요 쟁점
윤 명 숙(강원대학교)

- 43 3강(5.24)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경과
서 현 주(동북아역사재단)

- 51 4강(5.31) 사할린 한인, 내가 네 품에 안길 때까지
방 일 권(한국외국어대학교)

- 57 5강(6.7) 한국 원폭2세 환우 김형률의 박해인권운동
전 진 성(부산교육대학교)

- 63 6강(6.14)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의 길, 한국이 열었다
정 혜 경(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10기 역사 아카데미 안내

□ 개요

- 기간 : 5.10(목)~6.30(토), 19:00~21:00, ※ 8강중 6강이상 출석시 수료증 수여
- 8강은 답사일정으로 6.28(목)이 아닌 6.30(토)에 진행됨.
-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
- 장소 : 재단 대회의실(서대문 임광빌딩 11층)
- 대상 : 관심 있는 시민, 관련 학과 대학(원)생, 교사 등
- 주제 : 한국-일본,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정		주제	강사
1강	5.10 (목)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이야기,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	이원덕(국민대학교)
2강	5.17 (목)	일본군위안소제도의 실태 및 주요 쟁점	윤명숙(강원대학교)
3강	5.24 (목)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경과	서현주(동북아역사재단)
4강	5.31 (목)	사할린 한인, 내가 네 품에 안길 때까지	방일권(한국외국어대학교)
5강	6.7 (목)	한국 원폭2세 환우 김형률의 반핵인권운동	전진성(부산교육대학교)
6강	6.14 (목)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의 길, 한국이 열었다.	정혜경 (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
7강	6.21 (목)	<전체 토론회> 미래를 위한 전망-한일간에 해결하지 못한 이야기	사회 :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8강	6.30 (토)	한일 관련 유적지 답사	교육생 전체

1강» 5.10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이야기,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

이원덕(국민대학교)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이야기,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

이원덕¹⁾

I. 한일회담의 의의

1951년 10월20일 역사적인 제1차 한일국교정상화 교섭(한일회담)이 개최된 날, 한국 측 수석대표인 양유찬(梁裕燦)이 한일 간의 불행한 역사적 경위를 설명한 후, <이제 화해합시다(Let us bury the hatchet)>라고 발언하자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구치 사다오(井口貞夫)는 <도대체 무엇을 화해하자는 말입니까?(What is bury the hatchet?)>라고 반론했다고 한다.²⁾ 이후 파란과 우여곡절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한일회담을 예고해 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한일회담이 14년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난항할 수밖에 없었던 최대의 이유는 과거 일제 35년간의 식민지배에 대한 양국의 역사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데 있었다. 간단히 말하면, 일본정부는 35년간의 조선지배가 병합조약에 의한 합법 통치라는 인식에서 있었던 데 반해, 한국정부는 일제의 무력에 의한 강점으로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라는 기본 인식 하에 회담에 응했던 것이다. 이 과거사 인식의 괴리 문제는 비단 한일회담에 그치지 않고 전후 한일관계를 줄곧 마찰과 대립의 악 순환으로 끌어가는 최대 아킬레스 건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일회담은 세 가지 점에서 대단히 복잡한 교섭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이 회담은 세계외교사에서조차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교섭이 장기화되어 타결되기까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14년간의 마라톤 교섭기간 중 1500 여회를 넘는 각종 회담이 개최되었다. 둘째, 한일회담은 교섭개시 이래 타결을 이루기까지 미국이 지속적으로 깊숙이 관여한, 말하자면 한미일 3자회담의 성격을 띤 교섭이었다. 미국은 냉전기 대 공산권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한일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 때로는 배후에서 간접적으로 회담촉진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때로는 표면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회담 타결을 이끌었다. 셋째, 한일회담에서는 여러 가지의 의제가 동시에 다루어졌다. 즉, 한일회담에서는 기본관계, 청구권 문제, 어업-평화선 문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 등 굵직한 중대 현안이 동시에 다루어졌다.

1) 국민대학교 교수

2) 유진오.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일회담(23). 『중앙일보』 연재. 1983.9.26

이 중에서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도 과거사 청산과 직결되는 기본관계와 청구권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기본관계가 과거 정신적인 청산과 관련된 의제라면 청구권 문제는 물질적인 보상, 배상을 다루는 내용이다. 기본관계의 핵심 주제는 1910년 한국병합 조약의 해석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식민통치를 가능케 했던 구한말의 조약의 정당성 문제, 나아가 식민통치에 대한 평가 및 해석과 결부된 문제가 과거사 인식과 직결되는 기본관계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반해 청구권 문제는 식민지 과거사와 관련된 물질적인 차원의 보상과 관련되는 의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과거사 청산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대신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의 철폐와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즉, 일본은 한국의 과거사 청산 요구가 과도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국제법과 증거 논쟁으로 적절히 억제하고 그 대신 평화선 철폐를 통한 일본어민의 안정적인 어업권 확대를 꾀하고 일본사회의 골치 덩어리로 간주되는 재일교포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대의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은 미국으로부터 회담의 조기타결을 통한 국교수립의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II. 박정희 정권 이전의 한일 회담

2-1 이승만 정권 하의 대일회담- 역청구권과 <구보다 망언>의 회오리³⁾

이승만 정부는 정부수립 직후부터 대일 강화조약에 한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기본입장 하에 대일 배상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해왔다. 이 결과 작성된 것이 1949년 완성된 『대일 배상 요구조서』이다. 이 조서는 한국이 강화조약의 정식 서명국이 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전쟁 배상적인 성격을 띤 대일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서에는 현물의 반환요구 외에 확정채권,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하는 인적·물적 피해 그리고 일본의 저가수탈에 의한 손해보상 및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화조약에서 한국의 정식 서명국으로의 참가는 좌절되고 말았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한국을 대일 전승국의 일원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승만 정부는 대일회담에서 막대한 대일 배상을 요구하려던 애초의 계획을 철회하고 그 대신 강화조약 제4조에 입각한 재산, 청구권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른바 8개 항목의 청구권 요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청구권 요구에 대해 일본은 이른바 역 청구권의 논리를 제기하면서 한국에 맞섰다. 즉 일본은, 한국이 일본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일본 측으로서도 식민지 시대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하여 그

3) 이승만 정권기의 한일회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원덕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pp17-77을 참조.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한국은 일본 측의 예상외의 역 청구권 주장에 대하여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승만 정부 하에서 열린 초기 한일회담은 이처럼 역 청구권 논쟁에 휩싸여 좌초하고 말았다.

이후 1년 반 만에 가까스로 재개된 한일회담은 이번엔 「구보다 발언」이 몰고 온 회오리 속에 휩싸여 또다시 결렬되고 만다. 「구보다 발언」이라는 것은 제3차 회담 석상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인 구보다(久保田貫一郎)가 행한 발언이다. 당시의 논쟁상황을 재연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홍진기 대표는 “본래대로 하자면 한국은 일본지배 하에서 한국민족이 받은 피해-예를 들면 애국자의 투옥 학살, 한국인의 기본적 인권 박탈, 식량의 강제 공출, 노동력의 착취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 측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순수한 법률적 청구권만을 제출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구보다 수석대표는 “그렇다면 일본 측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36년간 별거승이 산을 푸르게 바꾸었다든가, 철도를 건설한 것, 水田이 상당히 늘어난 것 등 많은 이익을 한국인에게 주었다”고 반론하였다. 이에 홍 대표가 “마치 일본이 점령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인은 잠만 자고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말하고 있으나 일본에 점령당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인은 스스로 근대국가를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하자 구보다는 “사건으로 말 하건데 나의 외교사연구에 의하면 일본이 진출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점령되어 더욱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홍 대표가 “그렇다면 왜 카이로선언에는 <한국의 노예상태>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일본은 카이로 선언을 받아 들였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구보다 대표는 “카이로선언은 전쟁 중의 흥분상태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홍 대표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에 의해 취해진 전후의 처리, 예를 들면 한국의 노예상태로부터의 해방, 독립의 즉시승인, 60만 일본거류민의 본국 송환, 총독의 보호 하에 축적된 일본인재산의 몰수는 노예상태로부터의 한국인의 해방이라는 새로운 보다 높은 이상 하에 행해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구보다 대표는 이에 대하여 “사건으로 말 하건데 원칙적으로 보아 국제법에 부합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은가?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더욱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나로서는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싶지는 않으며 위반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만약 위반했다손 치더라도 일본이 미국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하였다”고 대답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구보다 발언을 회담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으로 규정하여 회담을 중단하고 발언의 진의를 추궁하였다. 즉 한국은 구보다 발언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구보다는 발언의 정당성을 강변하였을 뿐 조금도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또 이 발언에 대해 일본의 오카자키 외상도 “구보다 발언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말한 것뿐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여 이 발언이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대

한 정책과 일치하고 있음을 강변하였다. 일본내부에서 이 발언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당조차도 이론을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발언을 지지하는 것이 대세였다. 이로써 한일 회담은 4년 반 동안 개최조차 되지 못한 채 중단상태가 지속되었다. 1950년대 말에 이르러 마침내 일본 측이 역청구권과 구보다 발언을 공식 철회함으로써 회담이 재개되었으나 때마침 발생한 재일교포의 복송문제가 이승만 정부를 자극 하면서 한일관계는 또다시 파국을 맞이하고 따라서 한일회담은 또 다시 좌초되고 말았다.

2-2 장면 정권 하의 대일 회담- 청구권 실질토의

1960년대에 들어와 한일양국에는 신 정권이 탄생하여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그간 강경한 반일정책을 고수해왔던 이승만 정권이 학생혁명에 의해 붕괴되고 적극적인 대일 정책의 추진을 천명하는 장면 정권이 수립되자 한일관계는 회담의 조기타결을 서두르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이 변화에 때를 맞추기라도 하듯이 일본에서도 안보투쟁의 소란 속에서 퇴진한 기시의 뒤를 이어 이케다(池田勇人)가 수상에 취임하여 한일문제에 의욕을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60년 9월에는 고사카(小坂善太郎) 외상의 방한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10월 25일부터는 제5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다음해 5.16 군사정변으로 회담이 중단되기까지 7개월 간 진행된 이 회담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양국의 국내 정치적 제약과 양국 간의 현격한 입장차이 때문에 급속한 진전을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제5차 회담은 50년대의 회담과 비교할 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5차 회담의 성과로서 주목되는 것은 청구권 문제에 관한 실질토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과거 10년 간 네 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청구권문제가 한 번도 실질적인 내용의 토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법이론 논쟁으로만 매달렸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5차 회담에서는 공식 비공식 회의를 포함하여 청구권위원회가 32회나 개최되어 각 항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 하겠다.

즉, 청구권 위원회에서는 5.16군사정변으로 회담이 중단되기까지 한국 측이 제출한 일반청구권 8개 항목과 선박,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중 청구권의 중추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청구권에 관한 토의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일반청구권 제1항 地銀 · 地金の 반환에 대하여 한국 측은 지금, 지은의 양을 각각 67,541,771그램, 269,633,199그램으로 제시하고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⁴⁾ 그러나 일본 측은 지금과 지은은 일본이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온 것으로 법률적으로 반환의

4) 제1차회담시 재산, 청구권위원회에서 한국이 제기했던 8개 항목 중 제1항목은 지금, 지은을 비롯하여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지도원판 등의 현물반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5차 회담에서는 재산청구권 위원회가 일반청구권, 선박위원회, 문화재위원회의 3개 소위원회로 나뉘어져 개최되었기 때문에 地金, 地銀의 반환 요구만이 일반청구권위원회에서 다루어졌고 나머지 항목은 선박위원회와 문화재 위원회의 토의로 이관되었다.

무를 갖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한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묵살하는 태도를 취하였다.⁵⁾

다음으로 8개 항목 중 청구권 적용의 시기적인 범위와 직접관련이 있는 제2항, 제3항, 제4항 {(2)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정부의 대 조선총독부 채무를 변제할 것. 3)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의 반환할 것 4)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점) 또는 主 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在日 재산의 반환할 것}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은 근본적인 대립을 보였다. 즉, 한국 측은 일본재산의 미군정예의 귀속을 규정한 미군정령 33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점인 1945년 8월 9일을 기점으로 하여 8월 9일 이후의 재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이 한국에 있으며 따라서 그 이후 일본 측이 반출한 전 재산은 한국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러한 한국의 주장을 거부하고, 한국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미군정령 33호가 공포된 1945년 12월 6일 이후의 것에 한한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즉, 재한 일본재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한국 측은 8월 9일로 소급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반하여, 일본 측은 12월 6일 이후의 것에만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던 것이다.⁶⁾

셋째로 청구권 위원회에서 양국이 격돌했던 또 하나의 문제는 제5항의 문제였다. 즉 제5항에서는 “한국법인 또는 자연인의 일본국 및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 공채 · 일본은행권 · 피 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및 기타 청구권을 변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일본 측도 원칙적으로 “일단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권 토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⁷⁾으로 분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제5항과 관련하여 한국 측은 1961년 5월 처음으로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청구권이라는 형태로 일본 측에 요구했다. 그것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요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점에 있어서도 한일간의 토의가 평행선을 달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본 측은, 청구권 교섭에서 한국 측이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즉, 일본은 이 주장을 막기 위하여, 한국 측에 대해 철저한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는 이른바 증거논쟁으로 논의를 끌고 갔다.⁸⁾

철저한 증거의 제시를 요구하는 일본 측의 태도에 대하여, 한국 측의 대표를 역임한 한국 주일대표부의 문철순(文哲淳)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5) 한국의무부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회의록: 일반청구권위원회, 선박위원회, 문화재위원회』 pp.26-72

6) Ibid. pp.175-178 및 大藏省理財局外債課, 『日韓請求權問題參考資料』, (未定稿, 第二分冊), p.8. 이 자료에는 한국 측이 일본 측의 요구로 제출했던 “8항목의 청구권 요강”의 각 항목에 관한 일본정부의 견해와 그 법률적인 근거, 그리고 한일 교섭에 있어서의 한일쌍방의 청구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쓰여 있다. 이 자료(二分冊)는 총341쪽으로 되어 있고, “8개 항목의 청구권 요강” 전체에 대한 양국의 주장과 그 논거에 대한 記述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第二分冊에는 제1항목부터 제4항목까지의 참고자료가 게재되어 있고, 제5항목부터 제8항목까지는 第三分冊에 다뤄져 있다. 필자가 입수한 것은 제2분 책뿐이다.

7) 『日韓請求權問題參考資料』, pp.2-5.

8) 『제5차회담 한일회담 예비회담 회의록: 일반청구권위원회, 선박위원회, 문화재위원회』 pp.205-236

징병 등은 명백한 사실이며,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만 명의 인원이 연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한국 측에 구체적인 인원수나 증거자료를 요구하였다. 그것은 한국 측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한국에는 그런 자료가 없다. 일본 측이야말로 증거가 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일본 측에 보상하려는 의지가 정말 있다면, 한국 측에 증거를 내놓으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⁹⁾

한편, 당시 외무성의 북동아시아 과원으로 한일회담에 관계하고 있던 야나기야(柳谷謙介)는 일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불하는 것은) 외교당국, 교섭당국 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예산조치를 취하려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므로, 그럴만한 근거가 필요하다. 결국 청구권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증거나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불명확한 채로 청구권으로 지불하는 것은 일본 측의 법령상, 제도상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¹⁰⁾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제5차 회담의 청구권 위원회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회담이 중단된 1961년 5월까지, 8개 항목 요구 중 제1항목부터 제5항목의 일부까지의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토의에서 한일 양국은, 地金 · 地銀의 반환문제, 재한 일본 재산의 한국 귀속에 대한 시기적인 범위 문제 등에 관해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을 뿐, 실질적인 의견접근을 이루는 데는 실패하였다. 일본 측에 의해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인정된 개인피해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조차 그 토의가 증거논쟁에 집중된 나머지 구체적인 보상금액의 산정에까지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제5차 회담에서는 청구권 각 항목에 관한 실질적인 토의가 상당히 깊숙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의견접근은 성립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 회담에서 얻은 소득이라면 청구권 금액이 사무적인 토의에 기반 한 산정작업을 거쳐 합의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양 정부가 명백히 인식하게 된 점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사실은 제6차 회담에서 양국이 청구권문제에의 접근을 사무적인 해결이 아닌 정치적인 타결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III. 박정희 정권 하의 대일회담

9) NHK調査報告, 『アジアからの訴え-問われる日本の戦後』, (1992年8月放映, NHKスペシャル)에서의 증언.

10) Ibid.

1. 청구권 문제 타결과정

5.16 군사정변으로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 획득에 성공한 박정희 장군은 정권의 최대목표인 경제재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일 관계를 타결하여 일본으로부터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하였다. 따라서 군사정권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한일회담에 강한 열의를 보였다. 한편 당초 군사정권의 불투명한 장래에 대해서 관망의 자세를 보이고 있었던 이케다 정권은 1961년 6월의 케네디-이케다 수뇌회담을 계기로 군사정권의 회담재개요구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8월에는 외무성의 마에다(前田利一) 북동아과장이 방한하여 군사정변이후의 한국정세를 시찰한 후 군사정권의 안정성과 대일 회담에의 의욕을 일본정부에 보고하는 등 회담재개를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1961년 가을 제6차 회담의 개최가 합의되자 군사정부는 일본에 김유탉 경제기획원장을 특사로 파견하여 청구권문제를 일거에 정치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대체적인 청구권금액의 윤곽을 탐색코자 하였다. 김 원장의 방일을 맞아 자민당의 소위 친한파(우파) 지도자들은 정치적 해결의 원칙에 일부 동의하였으나 외무성을 비롯한 정부수뇌부는 성급한 정치적 절충과 더불어 실무적 교섭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였다. 이때 청구권 금액의 타결 선에 대해서, 김 특사는 8억 달러를, 일본 측이 5,000달러를 제시하여 양국의 엄청난 금액 차이가 드러났다.¹¹⁾

6차회담에서 분과위원회 별로 실무적 토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담의 중심은 고위급 정치회담으로 점차 옮겨져 가고 있었다. 1961년 11월에는 박정희 의장이 케네디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미하는 길에 동경에 기착하여 이케다 수상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회담의 조기타결에 돌파구를 열었다. 박 의장은 이 회담에서 일본이 성의를 갖고 청구권 문제에 임한다면 한국은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청구권만을 요구하고 정치적인 배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¹²⁾

일본정부수뇌와 자민당의 지도자들은 박 의장의 전격적인 방일과 대일 양보의 자세에 고무되어 회담촉진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와는 별도로 청구권문제의 실무교섭에서는 5차 회담이래 표면화된 양국의 상이한 입장이 조금도 좁혀지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조기타결을 서두르고 있던 군사정부는 실무적 교섭에 의한 타결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아래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어 일거에 청구권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무렵 이케다 정권은 청구권문제의 해결책으로 한국에 「경제협력방식」을 제시할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었다. 「경제협력방식」이란 경제적 곤란과 개발자

11) 외무부 정무국 아주과 『한일회담의 개관 및 제문제』 p.9

12) 『朝日新聞』 1961.11.13

금의 부족으로 고뇌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정권에 일정액에 해당하는 일본의 자본재와 役務를 유상, 무상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한국이 주장하는 청구권 요구를 포기시킨다는 일종의 우회 전략이었다. 즉, 이케다 정권이 구상하고 있던 시나리오는 청구권의 실무교섭에서는 철저한 법률론과 증거 논쟁으로 한국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정치적 절충에서 일본이 공업제품의 형태로 한국에 일정액을 제공하는 형태로 청구권협상을 타결한다는 것이었다.

1962년 3월의 한일외상회담부터 11월의 김종필-오히라(大平)회담에 이르기까지의 청구권을 둘러싼 양국의 정치적 절충과정은 이케다 정권의 상기 시나리오를 한국에 수용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정치회담에서는 청구권 개별항목에 대한 실무 레벨에서의 토의는 유보되고 그 대신 청구권 자금의 총액과 명목에 관해서 일괄적인 타결을 꾀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3월의 외상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케다 정부는 청구권금액의 총액을 산정하기 위해 査定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때 청구권의 총액으로서 대장성은 1,700만 달러 그리고 외무성은 7,000만 달러를 각각 산정하여 이케다 수상에 제출하였을 뿐 최종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¹³⁾ 이 금액은 당시 박정희 의장이 최저액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5억 달러 안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1962년 3월에 개최된 최덕신-고사카(小坂善太郎) 외상회담은 한국 측의 기대와는 달리 청구권 금액의 조정에 들어가기는커녕 법률론과 원칙론에 대한 쌍방의 공방만이 전개된 채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아직까지도 일본정부는 청구권금액의 최종적인 액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조정과정에 있는 액수를 보더라도 한국이 요구하는 액수와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케다 수상은 7월의 참의원 선거에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조급한 청구권타결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다만 이 회담의 성과라면 한일 양 외상이 청구권 금액으로서 7억 달러와 7천 달러를 각각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이었다.¹⁵⁾

1962년 7월 참의원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수상 재선에 성공한 이케다 수상은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에의 의욕을 가다듬고 새로운 외상에 오히라(大平正芳)를 등용하였다. 오히라 외상은 취임직후부터 외무성관료는 물론 자민당 수뇌부, 대장성 등과의 의견조정을 거쳐 청구권 처리에 대한 일본 측의 최종적인 복안 작성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등장한 오히라 구상의 골격은 청구권으로는 개인의 청구권에 엄밀하게 한정한다는 종래의 일본 정부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다만 이것에 무상공여, 유상의 경제협력을 추가함으로써 총액에서 한국의 요구에 접근하는 대신 청구권명목은 포기시킨다는 것이었다. 8월부터는 차기 정치회담을 위한 예비절충이 마련되어 스기 수석대표, 이세키 외무성 아시아국국장

13) 『日韓請求權問題參考資料集』 p.71

14) 배의환 『보리고개는 넘었지만; 배의환 회고록』 (코리아헤럴드,1992), p.168

15) 외무부 정무국,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회의록』,pp. 28-29

과 배의환 수석대표, 최영택 주일한국대표부 참사관의 4명만이 참석하는 절충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절충 역시 청구권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유보한 채 총액과 명목에 대해서만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음은 물론이었다.

이 절충의 첫 회담에서 일본 측은 외상회담에서 양국이 제시한 7억 달러 대 7000만 달러의 금액 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 측이 청구권 명목을 포기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⁶⁾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보 후퇴하여 「청구권의 테두리 안에서의 순수변제 3억 달러 플러스 무상 3억 달러」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였다.¹⁷⁾ 그러나 일본은 청구권의 명목이 사용되는 한 7000만 달러를 넘을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무렵 배의환 수석대표는 박 의장에게 「비공식 접촉의 결과 일본은 무상 3억 달러에 낙찰할 의사가 있는 것 같다. 다만 명칭은 미정이며 예비절충 중에는 이 금액과 1억 달러의 간격을 유지할 것 같다」고 일본 측의 진의를 분석하여 보고한 후 「만약 일본이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를 제안하면 이 선에서 낙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 한다」고 건의하였다.¹⁸⁾ 이후의 정치 절충에서는 명목에 관한 논의가 유보된 채 금액 차의 축소에 중심이 모아졌다.

결국 이 예비절충에서 양국의 제시액은 5억 달러 대 1억 7000만 달러까지 좁혀졌으나 더 이상은 축소되지 않았다. 예비절충에서 양국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최종적인 담판은 고위 수준의 정치회담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채택되었고 여기서 마련된 것이 김종필 정보부장과 오히라 외상 간의 회담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두 사람 만의 단독회담에서는 예비절충에서 제시된 양국의 입장을 상호조정하고 청구권문제의 최종적인 합의를 끌어내는데 중점이 놓여졌다. 10월 21일의 첫 회담에서 오히라 외상은, 이케다 수상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3억불을 일본 측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김 부장은 이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이며 한국은 적어도 6억불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명목에 대해서는 오히라 외상은 일본의 국회와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 독립 축하금 또는 경제자립을 위한 원조금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김 부장은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⁹⁾ 첫 회담에서 양국의 복안이 제시되었으나 최종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제2차 김-오히라 회담은 김 부장이 미국방문을 마치고 동경에 돌아온 직후인 11월 12일에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김 부장에게 긴급훈령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청구권 명목을 독립 축하금 또는 경제협력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16)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회의록』 pp.28-29

17) Ibid. pp. 42-46

18) “배의환 대사로부터 박의장에게 보고” 1962,8,30 『한국정부 외교문서』

19) 「1962년 10월21일에 있었던 김 부장과 오히라 외상 회담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그 내용」 『한국정부 외교문서』

어디까지나 우리국민이 청구권에 대한 변제 또는 배상으로서 지불 받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 지불금액에 있어서는 순 변제와 무상의 합계가 차관 액보다 많아야 하며 이의 총액이 6억불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양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 오히려 외상이 시사했던 무상공여 3억불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선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것이 회담촉진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할 것.²⁰⁾

이 훈령을 검토한 후 김 부장은 오히라 외상과의 두 번째 회담에 들어가 청구권의 명목과 금액에 관한 최종적인 답판을 벌였다. 세 시간 반에 걸친 이 단독회담에서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인 타결에 도달하였고 이 결과를 기록한 것이 김-오히라 메모이다. 이 메모의 작성은 “단독회담 후 생길 수 있는 해석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메모를 남기도록 하자”는 김 부장의 제안을 오히라 외상이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²¹⁾ 김-오히라 메모는 다음과 같이 간결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1)무상 : 한국 측 3억5천만 달러(오픈 어카운트 포함),일본측 2억5천만 달러(오픈어카운트 불 포함) / 이것을 양자가 3억 달러(오픈 어카운트 포함)로 10년 기간의 조기제공 가능조건으로 양 수뇌에게 건의한다.

2)유상(해외경제협력기금) : 한국 측 2억5천 달러(이자율 3%이하, 7년 거치, 20-30년 상환) 일본 측 1억 달러(이자율 3.5%, 5년 거치, 20년 상환) / 이것을 양자가 2억 달러(10년 기간조기제공 가능조건, 이자율 3.5%, 거치 7년, 20년 상환)로 양 수뇌에게 건의한다.

3)수출입은행 차관에 대해서 : 한국 측은 별개의 취급을 희망, 일본 측은 1억 달러 이상을 프로젝트에 의해 신장가능. 이것을 양자가 합의하여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양 수뇌에게 건의한다.²²⁾

이 메모는 일본 측이 한국에 제공할 금액으로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이라는 총액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제공의 명목에 관해서 이 메모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즉 이 메모는 명목에 관한 표기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메모에서 명목을 명기하지 않았던 것은 한일 양 정부가 대내적으로 이 금액의 명목을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포석이었다.

이후에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한국정부는 이 금액을 「청구권자금」 또는 「사실상의 배상」으로 설명하였고 일본정부는 「경제협력자금」 혹은 「독립 축하금」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추가실무접촉에 의해 확정된 합의문서에는 「일본의 무상유상자금의 제공의 수반적

20) 「대일절충에 관한 박의장의 김 부장과의 훈령」 1962년 11월 8일 『한국정부 외교문서』

21)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회의록』 pp.231-234

22) 『동아일보』 1992년 6월 22일자에 「김-오히라 메모」의 원문이 게재되었다.

인 결과로서 청구권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한국 측이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10여년의 한일회담의 최대 초점이었던 청구권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역사 청산이라는 본질과는 괴리된 채 「경제협력」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결착을 보게 된 것이다.

2. 기본관계의 타결과정

김-오히라 메모 이후의 한일회담은 군사정권내부의 혼란과 한국국내의 회담반대 운동의 격화라는 사태에 봉착하여 2년간의 정체상황을 면치 못하였다. 결국 한일회담의 최종적인 마무리는 1964년 11월에 재개된 제 7차 회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회담의 초점은 기본관계문서의 작성에 맞춰졌다. 기본관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 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과거조약의 무효시점에 관해서 한국 측은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 및 그 이전의 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null and void)라는 입장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합방조약은 일본의 패전 혹은 대한민국의 성립까지는 유효하며 일본의 한국통치가 합법적이었다는 관점에 서서 have become null and void 라는 표현을 주장하였다. 둘째로 한국의 관할권의 범위에 관해서 한국 측은 한국이 한반도전역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을 두고자 의도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북한정권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국의 관할권이 한반도 전역에 미친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표현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유엔결의 195(3)에 명시된 바와 같은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주장하였다. 유엔결의 195(3)에는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사실상의 관할지역이 남한에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주장이었다.²³⁾

실무교섭에서 이 두 가지의 대립사항은 평행선을 그으며 접근되지 못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청구권문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상회담에 의한 정치적 해결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椎名悦三郎) 외상 간의 회담에서는 두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타협안이 채택되었다. 구 조약의 무효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무효이다; are already null and void」라는 문구가, 그리고 유일합법성문제에 관해서는 「유엔총회결의 195(3)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as specified in the Resolution 195(3)」라는 문구가 채택되었다.²⁴⁾

이 문구는 쌍방의 주장을 절묘하게 타협시킨 것으로서 양국의 어느 쪽도 유리한 방향

23) 「기본관계 문제에 관한 훈령」 1965,1,25 ; 「김 대사의 외무장관과의 제5차 수석대표 회담결과 보고」 1965,2,12 『한국정부 외교문서』 참조.

24) 기본관계타결을 둘러싼 교섭경위에 대해서는 「한일 간 기본관계조약에 관한 교섭경위」 1965,2,20 『한국정부 외교문서』; 椎名悦三郎追悼刊行會, 『記録 椎名悦三郎(下卷)』 pp.74-76;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 (고려원, 1992) pp.225-231 참조.

으로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특히 정신적인 면에서의 양국의 과거청산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구 조약의 무효시점을 「이미 무효」라고 애매하게 규정한 것은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강변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즉 한국정부가 「이미」라는 시점을 구 조약의 체결시점부터 해석한 것과는 달리 일본정부는 식민통치가 종결된 일본의 패전이후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이는 양국의 전후처리의 핵심 내용인 역사인식의 괴리를 조약문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를 초래하여 이후에도 끊임없는 양국 간에 역사해석논쟁이 반복될 소지를 제공한 것이었다.

기본관계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의 식민지 시대에 대한 인식은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 근본적인 태도전환은 어디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서 다카스키발언을 들 수 있다. 다카스키(高杉晉一)는 재계출신으로 사토수상에 의해 제7차 회담의 수석대표에 임명된 인물인데 그는 외무성 기자 클럽에서의 회견에서 1965년 1월 7일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행하여 일대과문을 일으켰다. 그 일부를 옮겨보자.

일본이 조선에 대한 과거의 통치에 대해 사과하라는 이야기도 있다지만 일본으로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분명히 조선을 지배했다. 그러나 일본은 좋은 일을 하려고, 조선을 보다 낮게 하려고 한 일이었다. 지금 한국에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이런 것은 조선이 한국으로부터 떨어진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20년쯤 더 일본과 상종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일본의 노력은 결국 전쟁으로 좌절되었지만 20년쯤 더 조선을 가지고 있었다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대만의 경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²⁵⁾

결국 이 발언은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의해 보도되어 한일양국에 엄청난 회오리를 불러일으킬 뻔하였으나 한일회담에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진화 작업에 나선 외무성과 한국대표단의 노력에 의해 일단 수습되었다. 즉 다카스키는 자신의 발언내용이 공산당에 의해 허위보도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섬으로써 사태를 봉합하였던 것이다. 이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1965년의 시점에서 일본은 과거문제에 대한 태도는 구보다 발언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식적으로나마 일본의 조선통치에 대해 사죄의 의미를 최초로 표명한 시이나 외상의 한국도착 성명도 따지고 보면 일본의 과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 전환은 아니었다. 시이나는 1965년 1월 17일 김포공항에서 「양국간의 긴 역사 중에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며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이 한마디도 일본의 자발적인 의사 표명이라기보다는 한국정부의 막후에서의 至難한 노력의

25) 김동조, 『회상 30년 한일회담』 (중앙일보사, 1986) pp.269-270

결과였다.²⁶⁾ 즉 한국정부는 국민의 반일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내용을 담은 발언을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시이나 로서도 회담의 타결을 서두르기 위한 방편으로 이 발언을 행하였던 것이다.

이 성명에서 일본정부가 의도했던 점은 「불행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인지 또 「깊이 반성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이 성명의 법률적 함축을 최소화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²⁷⁾ 결국 이 성명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일 감정을 일시적으로 누그러트려 당면의 최대과제인 기본조약 가 조인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외교 기술로서 편의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었다. 즉 시이나 외상의 반성 표명은 결코 종래의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IV. 한일회담의 타결논리와 한계

한일회담은 양국간에 존재하는 과거사 인식의 깊은 괴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우호협력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교섭이었다. 그러나 14년간의 마라톤 교섭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과거사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좁혀질 수가 없었다. 36년간의 식민통치를 원천적으로 불법, 부당한 것으로 보는 한국 측의 인식과 그것을 적법하고 합당한 것으로 보는 일본 측의 인식이 외교협상을 통해 근접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처럼 과거 일본의 조선통치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현격한 인식 차로 말미암아 이 교섭은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겪은 후에야 타결될 수밖에 없었다.

14년간의 회담 전개과정에는 다음의 두 가지의 상반된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회담을 타결로 이끌어 가는 힘은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에 의해 주어졌다.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가 한일관계의 구심력으로 작용하여 교섭의 타결을 촉진시켰다. 반면 과거사 청산 논리는 회담을 대립과 갈등으로 끌고 가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교섭을 결렬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원심적인 힘의 원천은 과거사 청산의 논리에 의해 주어졌다.

냉전체제와 연계된 안보논리는 한편으로 전후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라는 형태로 작용해 왔다. 즉, 미국은 회담의 개시 단계에부터 타결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일회담의 타결을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애당초 한일 양국을 회담의 테이블에 앉힌 것이 다름 아닌 미국이었으며 나아가 반복되는 회담의 중단과 결렬사태를 회담재개와 타결로 이끌어가기 위해 때로는 배후에서, 때로는 표면적인 압력을 가한 것도 미국이었다.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회담타결의 중요한 근거를 제

26) 시이나 외상의 도착성명을 둘러싼 한일 간의 교섭과정에 관해서는 椎名悦三郎追悼録刊行會, op.cit. pp.44-45; 『前駐韓國大使 前田利一氏に聞く (上) 日韓國交正常化前 實況』, 『經濟と外交』 1985.7 참조.

27) 椎名悦三郎追悼録刊行會, op.cit. p.52

공한 것은 안보적 고려였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조선은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비수”라는 인식은 명치유신 이래 일본의 한반도 정책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정권 또한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이 희구하는 한일국교 정상화를 달성할 필요성을 느꼈다.

안보논리와 더불어 두 번째의 에너지 공급원은 경제논리였다고 생각된다. 경제논리가 회담타결의 주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1950년대에 담보를 면치 못하던 한일교섭이 196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타협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사실을 보아도 명백하다. 사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일 경제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상대를 경제적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만큼 긴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양국의 경제적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특히 한국의 경우 50년대 말부터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양적으로 크게 삭감되는 한편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침체와 불황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은 전후 대소전략의 일환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경제 원조를 서유럽을 비롯한 동맹국에 쏟아 넣은 결과 달러의 과도한 방출로 인한 후유증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은 50년대 말부터 달러방위라는 명목 하에 동맹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대폭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또 케네디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원조의 성격이 소비재 위주의 무상 원조방식에서 개발을 지원하는 차관 형 원조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되자 한국으로서는 대미의존형 경제체질을 탈피하여 자립적인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때마침 1961년 5월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 정희는 정권의 제일목표로서 조국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내걸고 야심 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본과 기술의 부족에 직면하여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곤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박 정권이 구상한 것이 다름 아닌 대일 관계의 타결노선이었다. 박 정권은 만약 대일회담이 타결된다면 상당한 액수의 청구권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더 나아가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다량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박 정권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스로의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대일회담의 타결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미국은 박 정권이 대일회담의 타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제 원조를 중단 내지 삭감할 것이라는 압박을 가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회담타결의 기운이 무르익기 시작한 6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일관계를 경제적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안보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물러난 기시 정권의 뒤를 이어 등장한 이케다 정권은 될 수 있으면 국내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안보 정치적 쟁점을 회피하고 그 대신 정치의 중심축을 경제로 옮겨놓는 쪽으로 정치노선을 설정했다. 이케다 수상이 야심적인 정책으로 내놓은 '소득배증계획' 이야말로 이케다 정치노선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일회담의 최대 난제였던 재산청구권 문제가 이케다 정권하에서 경제협력방식에 의해 타결되었다는 점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케다 수상은 한일회담의 본질을 경제문제라고 인식하고 대한관계를 경제외교의 일환으로 풀어 나가려고 시도하였다. 즉, 이케다 정권은 청구권 문제의 본질이 과거사의 청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제적 이해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케다 정권이 청구권의 해결방안으로 고안해낸 것이 경제협력 방식이었다. 경제협력 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한국의 청구권 요구를 명목과 지불의 둘로 나누어 지불 액수에서는 한국의 요구에 최대한 접근하고 명목에 관해서는 사죄와 보상의 의미를 배제하는 대신 경제협력의 의미를 부여한다. 둘째, 한국에 일본의 공업제품과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장래 한국에 대한 경제 진출의 토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방식의 요체는 지불의 방식을 자본이 아닌 공업제품과 용역으로 한다는데 있었다. 경제협력방식은 전후 일본이 인도네시아, 버마,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전후처리에도 적용했던 방식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전후처리의 방식을 오히려 동남아시아에 대한 경제 진출을 적극화하는 토대로 활용해 왔다. 일본은 한국에게도 이 방식을 적용시키고자 의도했던 것이다. 경제협력방식이 채용된다면 일본으로서도 결코 경제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으며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계산이었다.²⁸⁾

이처럼 한일회담의 타결은 냉전적 상황과 그에 기반을 둔 안보논리 및 경제논리에 의해서 촉진되었을 뿐 정작 회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 청산의 논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한일회담의 타결과 한일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정상적인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남아있는 것은 회담타결에 있어서 과거사 처리문제가 유보된 채 안보와 경제논리에 입각한 편의적인 해결만이 도모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루하고도 긴 교섭을 통해 양국 정부가 도달한 해법은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를 회피하고 유보하는 선에서 타협을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타협은 한일기본조약의 비준국회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즉, 한일 양국 정부는 비준국회

28) 경제협력방식의 창안자로 알려진 나카가와 조약국장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주목할 만하다. “나는 일본의 돈이 아니고 일본의 물품, 기계 혹은 일본인의 서비스, 역무를 지불된다면 이것은 장래 일본의 경제발전에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상대국에 공장이 생겨나고 기계가 간다면 수선을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부품이 수출된다. 공장을 확장할 때는 같은 종류의 기계가 일본에서 수출되게 된다. 따라서 경제협력의 형태라면 그것은 결코 일본의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NHK 調査報告 『アジアからの訴え; 問われる日本の戦後』(1992년 8월 放送)

에서 한일회담의 최대 초점이 되었던 청구권 문제와 과거인식 문제에 관해서 전혀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한국병합 조약에 관해서 한국정부는 「이미 무효이다」라는 규정을 「당초부터 원천적으로 무효였다」라고 해석한데 대하여 일본정부는 「지금은 무효이나 당시는 유효하고 합법적 이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유상, 무상의 자금의 지불명목에 대해 한국정부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해석한 데 반해서, 일본정부는 어디까지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경제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협력」이라고 해석하였다. 과거 청산이라는 핵심문제에 관해서 한일 양국의 이와 같은 상반된 해석은 한일조약이 얼마나 본래의 모습과 괴리된 일그러진 전후 처리였는가를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²⁹⁾

V. 박정희 정권의 대일회담 평가

1. 동남아 배상과의 비교³⁰⁾

한일 간의 전후처리는 이처럼 청구권과 경제협력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타결을 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이 점령했던 기타 아시아 제국과의 전후처리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먼저 대만과 중국의 경우는 여타 연합국의 경우와 같이 각각 일본과의 양자조약을 통해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최대피해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일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전후 줄곧 중국에게 막대한 규모의 정부개발 원조를 제공한 것은 이 배상 청구권 포기 조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는 강화조약 제14조에 입각하여 개별교섭과 배상협정을 통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정식으로 배상을 받은 4개국이란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인데 미얀마에 2억 달러, 필리핀에 5.5억 달러, 인도네시아에 2.2억 그리고 베트남에 4000만 달러가 각각 지불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차관의 형태로 경제협력 자금이 제공되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기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준 배상적 조치로 다소간의 경제협력이 제공 되었다. 현재 일본과 미수교 상태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전후처리가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일본은 장차 북일 국교정상

29) 한일기본조약의 체결로부터 40년이 경과한 오늘에 있어서도 과거사 청산문제는 여전히 한일관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최근 한국 측의 한일협정 관련 외교문서의 일부공개로 계기로 한일 과거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일제 시대에 강제로 징용, 징병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중대한 정치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한일 과거사 인식 및 청산 문제가 다시금 새삼스럽게 조명을 받고 있다.

30) 일본의 대동남아 전후처리와의 비교에 관한 연구로서는 이원덕 “일본의 전후처리외교 연구: 대아시아 전후 배상정책의 구조와 함의” 『일본학 연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제22집 2007.9 참조.

화가 달성된다면 1965년 당시 한국에게 제공했던 금액에 상당하는 청구권 자금을 북한에 게도 지불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일본의 대 아시아 전후처리는 한반도의 남북한에 대해서는 강화조약 제4조에 입각한 재산, 청구권의 틀로 해결을 보았고 중국-대만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권의 포기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동남아 제국에 대해서는 강화조약 제14조의 틀에 입각하여 배상 및 준 배상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종결되었다. 일본이 배상, 준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 등의 명목으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지불한 금액은 역사상 패전국이 지불한 배상금에 비한다면 아주 가벼운 것이었다. 또한 일본이 지불한 전후처리 비용은 철저하게 현금의 형태가 아닌 현물과 역무의 방식으로 지불됨으로써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일본경제 진출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일본이 유리한 조건에서 전후처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전후 냉전체제의 도래 때문이었다. 미국은 새로운 적국으로 등장한 공산 소련과 중국에 맞서기 위해 패전국 일본의 배상 책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그 대신 경제 및 산업재건을 후원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전후 냉전체제의 급속한 확산과 이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패전국 일본은 전쟁 배상의 막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오히려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던 것이다.

5-2 박 정권의 대일회담 평가

한일회담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속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외교교섭을 벌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첫째, 한일회담의 출발점은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이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이 강화조약에서 전승국의 지위를 획득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펼쳤지만 최종적으로는 좌절하고 말았다. 그 결과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보상을 요구하려던 애초의 계획은 재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배상 권리를 향유하는 제14조국에서 탈락함으로써 한일 간 전후처리는 제4조에서 규정한 대로 재산청구권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점은 한일회담 내내 한국의 대일 협상력을 제약하는 변수로 작용했다.

둘째, 당시 한일의 국력차를 고려해야 한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경제력으로 보면 1960년대 중반 한국은 일인당 국민소득 100불이 안 되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고 일본은 이미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있었다. 또한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수립된 허약한 신생국가에 불과했으나 일본은 명치유신 이래 탄탄하게 정비된 막강한 관료조직을 지닌 강대국이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철저한 법률론과 증거론을 내세워 한국의 과거사 청산요구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정부는 14년간 일본과 ‘외교전쟁’을 벌인 것이다. 박 정부는

대일교섭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과거사 청산과 개발자금의 획득 그리고 서측 진영의 결속을 통한 안전보장의 확보를 추구하려 했다. 박 정부는 이 세 가지 목표 중 경제적 이익의 확보와 안보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다. 빈곤과 안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국교수립을 통해 경제개발 자금을 도입하고 미국으로부터 안보 공약을 공고히 하는 것이 우선적 국익이라고 박 정부는 판단했던 것이다. 박 정부의 이러한 전략적 선택이 이후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1950년대 배상자금을 성공적인 경제개발로 연결시키지 못한 동남아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와 안보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과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된 점은 한일회담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제하 강제연행 피해자, 종군위안부의 보상 문제 등 미해결의 과거사 청산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한일관계를 짓누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한일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위를 고려할 때, 현재 일제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국내조치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문제는 당시의 한국 정부 못지않게 일본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일본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정 국제법이나 형식논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종군위안부 등 미해결 과거사 현안의 해결에 적극 나섬으로써 한국과의 역사적 화해에 동참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강 » 5.17

일본군위안소제도의
실태 및 주요 쟁점

윤명숙(강원대학교)

일본군위안소제도의 실태 및 주요 쟁점

윤명숙¹⁾

1. 머리말

이제 우리에게 '위안부'²⁾라는 단어는 제법 익숙한 말이다. 위안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들다 해도 누구든 적어도 한번쯤은 위안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위안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최근 대학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강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작년 가을학기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남긴 강의평가 중에서 두 개 소감을 들어보자. 첫 번째 소감이다. '처음에 위안부에 관한 수업이라고 해서 한 학기동안 배울 만큼 내용이 많은가 생각했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다.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아 좋았고 특히 남학생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강의였다.' 본인이 소개하기엔 좀 남우세스러운 평가도 들어있지만, 이 학생의 소감에서처럼 수강생(40명) 대부분이 위안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 첫 강의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수업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원 없다고 대답하였었다.

강의평가에 남긴 두 번째 소감이다. '한 학기 내내 위안부에 관해 강의한다는 강의계획서는 저에게는 조금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것에 대해 배우지? 그것도 한 학기 내내..."라는 의문으로 처음 수업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가진 편협한 사고를 발견했고, 그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시간과 또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들 소감은 내게 큰 격려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위안부 문제가 청년들에게 '불편한 화제'로 생각될 수 있다는 사실에 나 역시 조금 놀랐다.

위안부 문제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사람으로 치자면, 유아기, 소년기를 지나 성년으로 성장했을 세월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우리들의 인식은 여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한 면이 적지 않으며,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남겨놓고 있다.

1) 강원대학교 강사

2) 이 글에서는 독자가 읽기 쉽도록 편의상 '위안부'의 따옴표(' ')를 생략한다. 상세한 용어 설명 등은 본문 참조.

그러나 한편,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학문적으로는 역사학(구술사 포함) 뿐만 아니라 여성학, 교육학, 법학, 사상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었으며 많은 성과를 남겼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군위안소제도의 실태 연구³⁾, 둘째, 피해자의 증언 수집을 통한 군위안부의 피해와 군위안소에서의 생활실태 연구⁴⁾, 셋째, 군위안소제도에 대한 국가책임과 관련하여 국제법적인 고찰과 국가책임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내외운동 관련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⁶⁾ 한일양국의 선행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1차 사료가 다수 소장되어 있는 일본에서의 연구는 군위안소제도의 실태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는 한편, 한국을 비롯한 각 피해국에서의 연구나 조사는 피해자의 증언을 통한 군위안소에서의 생활 및 피해 실태를 채록·발간이 주를 이룬다. 피해자의 구술은 문헌자료에서는 알 수 없는 실태를 파악·보완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군위안부와 관련된 용어(일본군'위안부', 정신대, 종군위안부, 성노예)에 대해 정리해 두고자 한다. 1990년대 초 군위안부문제가 한일양국에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을 때, 한국에서는 '정신대'라는 용어가 군위안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는 1988년경 한국사회에서 이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을 때 '정신대'로

- 3) 한국에서 발간된 대표적인 저서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진상조사연구위원회 엮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역사비평사, 1997),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책임을 묻는다-역사, 사회적 연구』(도서출판 풀빛, 2001), 안연선 『성노예와 병사 만들기』 등이 있고, 일본에서 발간된 것으로는,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편저, 『공동연구 일본군'위안부'(共同研究 日本軍慰安婦)』(오즈키서점大月書店, 1995),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從軍慰安婦』(오즈키서점岩波新書, 1995), 윤명숙, 『일본의 군대위안소제도와 조선인군대위안부(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と朝鮮人軍隊慰安婦)』(아카시서점明石書店, 2003. 동 저서는 박사논문 『일본의 군대위안소 제도 및 조선인군대위안부 형성에 관한 연구(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及び朝鮮人軍隊慰安婦の形成に関する研究)』(一橋大学히토즈바시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2000.7)를 출판한 것임), VAWW-Japan 엮음, 『일본군 성노예제를 심판한다 2000년여성전쟁범죄법정의 기록(日本軍性奴隷を裁く 2000年女性戦犯国際法廷の記録)』(료쿠후출판緑風出版, 2000~2002)이 전6권 등이 있다. 그 외 특기할 것은 ICJ(국제법률가위원회) 보고(1994.11), UN의 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Coomaraswamy의 보고(1996.2, 2003), UN의 인권소위원회의 맥두걸McDougall 보고(1998) 등이 있다. 이외 문헌 목록은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 편, 『강제연행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선인, 2005) 참조.
- 4) 한국에서 발간된 증언집으로 제한하자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소 공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한울, 1993)이 시리즈로 2001년 5권까지 출간되었고(단 시리즈 4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집 편),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소 공편, 한울, 1995)과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2』(정신대연구소 편, 한울, 2003), 『버려진 조선의 처녀들』(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아름다운 사람들, 2003) 등이 있다.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증언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일본에서 제소한 재판기록(일본어, 각 지원단체 발간)이나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피해자의 증언집(일본어) 등이 있다.
- 5) 주요 저서(한국 발간)로 제한하면, 김명기, 『정신대와 국제법』(법지사, 199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풀빛, 2001),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보고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위안부'문제의 책임을 묻는다』(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박원순, 「일본전쟁범죄처벌 지급도 가능한가」(『역사비평』 20호(1993.봄호), 1993), 김창록, 「정신대문제를 통해 본 일본의 전쟁책임」(『학술논집』 3, 한국해양대 사회과학연구소, 1998)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이외 문헌 목록은 앞의 책, 『강제연행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 참조.
- 6) 『강제연행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 편, 선인, 2005)에는 2003년까지 한일양국에서 발간된 군위안소·위안부 관련 단행본, 논문 등의 문헌목록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에 대해서는 해제도 실려 있다. 또한 일본에서 발간된 문헌에 대해서는 『'위안부'관계문헌목록(慰安附関係文献目録)』(재단법인여성위환아시아평화국민기금財団法人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편, 교세ぎょうせい, 1997)에 자세하다.

동원된 여성이 바로 군위안부였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어느 정도 수정되었는데, 군위안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정신대’와 위안부는 별개의 목적을 위한 동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즉 ‘정신대’는 ‘여자정신근로령’(1944년 8월7)등에 따른 노동동원이지만, 위안부는 여성의 ‘성동원’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군위안부와 ‘정신대’는 원칙적으로는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⁸⁾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 ‘종군위안부’라는 용어가 있다. 이 용어는 각기 이유는 다르지만, 한국 피해자·지원단체측과 일본의 소위 우익측 모두에서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측 반대의견은 ‘종군’이라는 말에 “자발적으로”라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고, 일본 우익측 주장은 ‘종군’이란 용어 속에 ‘군’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마치 군과의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로 다른 이유지만 결국 현재는 일본군’위안부’(혹은 군위안부, 위안부)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덧붙여서, 위안부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성폭력’이지 ‘위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해 ‘성노예’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의 본질이 성폭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필자도 적극 동의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필자의 역사연구자라는 입장에서 남성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위안부’라는 용어를 역사용어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문맥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군위안부, 위안부를 혼용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어떠한 논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이하 본론에서는 먼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간단하게 개괄한 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핵심 논쟁 두 가지에 대해 서술한다. 첫째는 일제 식민지기 조선에서 군인들의 총검을 앞세운 납치와 같은 강제연행이 있었느냐의 여부, 둘째는 군위안부가 일본의 합법적인 공창제도하에 성매매를 한 공창과 같은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이다.

2. 일본군’위안부’ 문제 개괄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시기는 1980년대 말이다. 이때는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이었는데⁹⁾,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7) 여자정신근로령의 공포는 1944년 8월이지만 조선여성에 대한 근로동원은 이보다 앞서 있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43년 9월 ‘여자근로동원 촉진에 관한 건’에 의해 일본국내에서의 여자근로정신대의 결성이 결정된 것이 적용되었다. 또한 조선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동원은 보국대 등의 이름으로 행해져 1943년 이전 시기에도 나타난다.(앞의 책, 『일본의 군대위안소제도와 조선인군대위안부(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と朝鮮人軍隊慰安婦)』 286~294쪽).

8) 「군 위안부 / 정신대의 개념에 관한 고찰」(정진성 『사회와 역사』 문학과 지성사, 2001.)이라는 논문에서는 필자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필자의 추후 과제이다.

9)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은 1990년 5월이다.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하여 군위안부문제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여성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보상 등을 요구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방 이후 45년이나 지난 1990년대가 되어서야 문제로 제기된 이유는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은 1979년 10월, 18년간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막을 내렸으나 군사독재는 여전히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오랫동안 민중의 목소리는 억압되었다. 이러한 정치상황은 1970년대 이래 계속된 민주화 투쟁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받는 '6.29선언'(민주화선언)에 의해 민주화 사회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민주화의 진전은 여성운동에도 반영되었고,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1970년대부터 '매춘' 문제를 다뤘던 여성단체가 일본군'위안부' 문제까지 다루게 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에서 센세이셔널한 반응과 주목을 받게 된 기폭제는 생존자의 커밍아웃이었다. 김학순¹⁰⁾의 커밍아웃은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정조이데올로기가 뿌리 깊은 한국사회에서 전혀 뜻밖의 일이었고, 피해당사자의 출현은 군위안부문제를 활자 속의 과거로서가 아니라 생생한 현재진행형의 역사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커밍아웃은 북한,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네덜란드여성 포함), 버마(현 미얀마) 등지에서 이어졌다.

일본군위안소가 설치된 지역은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괌 등 일본군이 점령하거나 전투를 치렀던 모든 전쟁터였으며, 일본에서 유일한 전쟁터였던 오키나와에도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일본의 군위안소에 동원되어 위안부로 사역당했던 여성의 규모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최저 5만 명 전후, 혹은 8만 명에서 20만 명¹¹⁾ 가까운 숫자가 통설이다.¹²⁾ 또한 각 피해국(민족)의 비율은 조선인 51.8%, 중국인 36.0%, 일본인 12.2%로, 조선인과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이 비율의 근거가 된 자료는 1940년 조사이다. 따라서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전선(戰線)이 확대되었으므로 1942년 이후에도 동일한 자료가 있었다면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본의 군위안소제도에 동원된 여성 중에는 식민지·점령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는 노골적인 인종(민족)차별이었다는 것이다.¹³⁾

10) 김학순은 1997년 12월 사망하였다.

11) 위안부 숫자가 두 종류인 것은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형태가 매우 다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소제도하의 피해여성으로 엄격하게 구분한 숫자가 “최저 5만명 전후”인 것이고, ‘일정기간 감금, 강간한 경우까지도 포함한 경우의 숫자가 “8만명~20만명”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 두 종류의 숫자 모두 ‘추산’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2)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보고서·한일간의 역사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한국어번역판), 동북아역사재단, 2007, 17쪽.

13) 위 보고서, 『보고서·한일간의 역사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한국어번역판), 17쪽.

3.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두 가지 쟁점 - '강제연행'과 '공창' 여부

1990년대 들어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에서 사회 문제로 제기되어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된 이래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요 쟁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군위안부 동원이 강제연행이었는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군위안부가 공창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들 쟁점에 대한 논쟁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것은 이들 쟁점이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소제도 및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강제연행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3-1. 위안부 피해자란 누구인가 - 강제연행

이른바 일본의 우익과 피해자 및 지지단체 간에 언제나 상반되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위안부 피해자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주장을 엇갈리게 하는 키워드는 강제연행이다. 즉 일본 우익의 주장은 군위안소제도의 피해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여성의 징집 형태가 취업사기나 인신매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연행이 아니므로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강제연행의 이미지는 봄 들판에서 나물 캐는 숫처녀를 일본군이 총검을 앞세우고 강제로 군용 트럭에 실어 징집하는 형태의 것을 말한다. 이런 이미지는 1990년대 초기에는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우익뿐 만 아니라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측에서도 널리 퍼져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바로 수정되었다. 실제 커밍아웃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하면 할수록 식민지에서의 징집은 총검을 앞세워 무력으로 시행된 점령지에서와는 달리 식민지라는 지배 체제를 십분 활용한 취업사기나 인신매매 등의 방식이 많았고, 그런 방식이 커밍아웃한 전체 피해자의 약 80%정도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후에 설명하겠지만 내무성 및 육군성 통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이 선정한 징집업자가 위안부를 징집할 때 그 방식은 공창제도에서 창기(娼妓) 등을 공급하는 방식과 같았는데, 이는 조선 국내에서 군위안부를 징집할 때 국내 접객업 및 소개업의 공급 매커니즘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는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었다.

강제연행이란 강제로 트럭에 실려 가는 형태만이 아니라 국제법에서 위법으로 인정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납치 등의 방식도 강제연행에 들어간다. 더우기 위안부 피해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강제연행이라는 징집 형태만이 아니라 일본군위안소제도하의 위안소 개설 및 운영, 위안부의 징집 및 이송, 전후처리 등 모든 과정이 위안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군'위안부'란 1938년 3월 내무성 및 육군성 통첩(군·정부)에 의해 일본군위안소제도가 성립된 이후 일본정부와 군의 직·간접적인 통제 감

독 및 관여 하에 징집·이송되어 위안소에 구속되어 성행위를 강요당한 모든 여성을 말한다.

3-2. 위안부와 공창의 차이점

이른바 일본의 우익과 피해자 및 지지단체 간에 언제나 상반된 주장이 또 하나 있다. 일본 우익의 주장은 군위안부는 당시 일본 국내와 식민지에서 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던 공창제도의 공창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군위안부 역시 합법적으로 실시되었던 공창이었으므로 국가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무엇을 근거로 군위안부와 공창이 같다는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일본군위안소제도 그 자체에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본군위안소제도는 근대 이후 성립한 공창제도를 골간으로 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창제도의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하여 군위안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양자의 형상이 매우 흡사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두 제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선 설치 지역의 특징을 대략 구분하자면, 공창제도는 일본이 식민지에 이식한 제도인 반면 군위안소제도는 점령지에 개설된 제도였다. 특히 중일전쟁 발발 이후 급격하게 확대된 점령지에 일본은 공창제도를 대신하여 위안소를 설치한 것이다.

또한 공창제도와 군위안소제도의 운영 시스템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공창제도에 대한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공창제도는 내무성(경찰)이 업자에게 지정된 장소에 영업을 허가하면 업자는 소개업자를 통해 창기 등을 고용하여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한다. 고용된 창기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경찰이 이를 단속한다. 이렇듯 원칙적으로 공창제도에서 국가의 역할은 업자가 법을 준수하여 영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단속하는 것이다. 즉 국가와 업자의 관계는 단속의 주체인 고객체인가로 구분되는 것이다.

한편 일본군위안소제도의 운영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일본군이 직접 업자가 되어 위안소를 운영하거나(군직영위안소), 둘째, 군이 업자를 선정하여 영업을 허가하고 업자를 통해 위안소를 통제·감독하거나(군전속위안소), 셋째, 기존의 매춘업소를 일정기간 일본병사용으로 지정하여 이용하게 하는(군이용위안소¹⁴)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형태는 두 번째 군 전속 위안소로 조선 여성이 가장 많이 동원된 위안소인데 가장 보편적인 형태였던 것 같다. 군 전속 위안소란 그 형태를 보면 드러나듯이 공창제도와 거의 형식이 같기 때문에 군위안소임에도 불구하고 공창제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요소가 거의 동일하게 발견된다. 즉 공창제도에

14) 이 경우 민간인이 위안소를 이용할 경우는 군인과 요일을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하여 민간인과 섞여서 사용하지 않도록 운영된다.

서는 업자가 경찰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영업하되 피고용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형태라면, 위안소제도에서는 업자가 군의 허가를 받아 위안소를 개설하고 군이 정한 규칙에 따라 위안부가 건강검진을 받는 식으로 거의 형식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둘의 운영형태가 흡사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듯 업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는 식의 겉으로 쉽게 노출된 운영시스템에서는 양자가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이 때문에 위안부와 공창과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일본군위안소제도는 공창제도와는 달리 국가(군·정부)가 직접 위안소를 운영하거나 혹은 위안소 업자를 통하더라도 일일 혹은 월말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식으로 운영을 직접 통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위안부를 징집하는 것도 군이 선정한 업자가 징집 지역의 경찰과 헌병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하며, 군트럭이나 철도 및 군함 등을 이용하여 이송한다. 군이 인솔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국가가 위안소를 직·간접으로 운영한다. 이 점에서 국가의 역할은 공창제도와 현격히 다르다. 이 때문에 군위안소제도에 의한 피해자들이 사죄와 개인보상을 그 책임자인 일본정부에 묻는 것이다

4. 일본정부, 일본군위안소제도에 대한 국제법 위배 가능성 인지

일본정부가 당시 국제법과 관련해서 ‘위안부’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본정부는 군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을 위반하여 논란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고 동시에 국제사회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였다.

제한된 문헌 자료이긴 하지만 일본정부가 당시 어떻게 위안소제도를 주도하면서 은폐하고자 노력했는지를 보기로 하자. 첫째, 1938년 2월 23일 발포된 내무성 통첩¹⁵⁾과 동년 3월4일 육군성 통첩¹⁶⁾이다. 이들 통첩에서는 위안부로 모집하는 여성은 21세 이상 ‘매춘’경험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고, 경찰에게는 부녀 매매 또는 약취유괴 등의 형태로 ‘모집’하지 않도록 단속업무를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위안부 징집업자와 일반 소개업자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여 군 명의를 사칭하는 일반 소개업자가 위안부를 징집하는 것을 엄하게 단속하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안부 징집업자로 하여금 지역 경찰과 헌병과 등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징집할 것을 지시한다. 이처럼 일본은 국제법 ‘부인 및 아동의 매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에서 언급하는 연령 제한 및 일반 부녀에 대한 인신매매나 약취유괴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방지에 노력하였다. 이런 위법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지시한 것은 일본 국내에만 한정돼 민족차별이었다. 이

15) 내무성 경보국장, ‘지나 도향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 1938년 2월 23일.

16) 육군성 병무국 병무과,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 1938년 3월4일.

로써 일본은 국제법의 허용조건을 전제로 군위안부 징집을 허가하면서 군위안소제도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1938년 11월 8일 내무성 경보국 자료¹⁷⁾를 보면, 일본 국내에서 정부가 위안부 징집에 어떻게 관여하였고 국제법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손으로 쓴 이 자료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내무성은 각 지역 경찰이 징집업자를 선정하여 부녀를 징집하게 하되 절대 경찰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숨기게 하였다. 그리고 위안소 경영을 희망하는 업자는 경영자의 주소, 성명, 경력 및 인솔부녀수를 '은밀히' 전화 등으로 내무성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실제로는 경찰이 뒤에서 징집업자를 선정했으면서도 겉으로는 업자가 주도적으로 위안부를 징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경찰은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내무성은 흑막 뒤에서 위안부 징집에 조직적으로 관여·협력하였다.

셋째, 1942년 1월 10일, 1월 13일 대만총독부의 외사부장과 외무대신 간의 왕복 전신 외무성 자료¹⁸⁾이다. 이 자료는 태평양전쟁 발발 후 군위안소 설치 지역이 남방으로까지 확대되자 중국에의 도항과는 달리 남방으로 도항해야 하는 징집업자 및 위안부에 대한 여권발급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된다. 이런 사태에 대해 대만총독부가 취급 방침을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으로, 외무성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군 증명서로 도항하게 할 것'을 지시한다. 손으로 쓴 이 자료 역시 최종 문안에서는 일부가 삭제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군 증명서를 가지고 군용선으로 도항하게 할 것'(밑줄이 복원부분, 인용자)이라고 되어 있다. 외무성은 위안소 관련 업자 및 위안부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외무성이 여권 발급으로 생길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아예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소제도와 관련해서 당시의 국제법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담당부처에 따라 적극적인 관여와 적당한 은폐라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결국 당시의 일본정부는 군위안소제도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사안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⁹⁾

5.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의 유형²⁰⁾

17) 내무성 경보국, '남지방면 도항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시행통첩안)', 1938년 11월 8일.

18) 대만총독부 미네타니 데라오(峰谷照雄) 외사부장/도고 시게노리(東郷茂徳) 외무대신, '남방 방면 점령지에 있어서 위안부 개설에 관한 건·남방방면 점령지에 대한 위안부 도항 방법 건', 1942년 1월 10일/1월 13일.

19) 이상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현대송 편, 2008. 나남)에 실린 줄서 「일본군위안소제도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 내용 중에서 오류 등을 정정하여 고쳐 실었다.

20)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형태에 대해서는, 줄고 「중국인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노트」(『계간 전쟁책임 연구』 제27호, 동경,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터, 2000년 봄호) 참조.

- ① 군위안소제도 하의 군위안소에서 연일 '성행위'를 강요당한 경우
- ② 일본군의 토벌작전 중에 납치되어 감금 상태에서 연일 강간당하는 경우, 개중에는 고문을 동반. 또는 주둔부대 주변의 여성이 자택이나 부대에 연행되어 연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정기·부정기적으로 강간당함(예: 중국 산서성)
- ③ 남경대학살 범죄 중에 가장 많이 보고되는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간치사상 등의 경우. 전투 중이나 토벌작전 중에 강간당하는데 일정장소나 일정기간 동안 구속된 상태는 아님

※ ①형태= 주로 식민지 여성, ①②③형태= 점령지 여성

따라서, 군위안부 피해자는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유형 중의 하나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군위안부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식민지 조선이나 대만에는 공창제도하의 유곽(성매매) 이외에,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군인·군속 전용)을 위한 '위안소 형태'가 있었으며, 일본 국내에는 탄광촌을 중심으로 조선인 탄광노무자를 위한 '산업위안소'가 있었다. 참고로, 일본 국내에서 유일한 전쟁터였던 오키나와에는 군위안소가 있었다.

5.1.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누구인가?

- 국가에 의한 성폭력의 범주
- 식민지에서의 '공창' 그리고 군위안부

5.2.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 군산의 노예 매춘
- 한국사회의 성매매 실태 및 우리들의 인식

6. 미국을 비롯한 결의안 - '강제매춘'

6.1. 국제법

'부인 및 아동의 매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1921)'

'노예조약(1926)'

'헤이그 육전조약(1907)'

'전쟁범죄에 대한 죄' 또는 '인도에 반한 죄'(뉴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과 극동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의거),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1930)'²¹⁾

21) 이들 법률 중에는 현재의 인권 개념에 부합되지 않아 적용여부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테면

1996년 1월 4일자 인권위원회 최종보고서(쿠마라스와미): '유의'

1998년 8월 26일 '소위원회의 '인권위원회 차별방지·소수자 보호 소위원회'(맥두걸의 보고서) - '환영'22) 일본의 평화조약·평화협정23)

6.2. 결의안

- 2007년 미국 결의안: 강제 군대 매춘 제도 등

- 힐러리 클린턴, "위안부는 매춘 강요 희생자: 위안부(comfort women)가 아니라 매춘 강요(forced prostitution)의 희생자들입니다."(세계일보, 2012. 3. 12.)

7. 마치면서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었다.24) 미국 민주당 마이클 혼다 의원이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한지 약 6개월 만이었는데 이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제국군대가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알려진 성노예로 만든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25)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에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잇따라 결의되었다. 유럽의회는 2007년 12월 12일 '위안부 여성을 위한 정의(Justice for the 'comfort women')라는 의제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미국 하원(7월30일), 네덜란드 하원(11월8일), 캐나다 연방하원(11월28일)에 이어 4번째였으며, 호주와 필리핀 등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26)

이러한 국제적인 결의안 채택 움직임도 실질적으로 일본정부에 대한 압력이 되지 못해 보인다. 또한 법적책임에 따른 사죄 및 개인보상 등 일본정부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소위원회(이하 유엔소위원회)의 권고 역시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유엔소위원회의 권고가 아무리 강제력이 없다고는 해도 피해자의 끈질긴 요구 및 지지단체들의 투쟁을 비롯한 유엔소위원회의 권고 등의 세계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법

헤이그 육전조약은 관습법으로 점령지에서의 "가문의 명예 및 권리, 개인의 생명, 사유재산"등의 존중을 요구하는 조항(제46조)이 적용된다는 것인데, 군위안부로서의 피해가 피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즉 여성 개인에 대한 성폭력이 본인의 인권침해에 해당되어 처벌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간과 같은 굴욕적인 행위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인권개념과는 괴리가 있다. 다만 이러한 육전조약은 20세기초 당시의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현재의 인권개념에 비추어 적용의 타당성을 따지는 판단은 유보하기로 하겠다.

22) 앞의 책, 『일본의 군대위안소제도와 조선인군대위안부(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と朝鮮人軍隊慰安婦)』 52~54쪽.

23) 「유엔소위, "일 위안부 배상 완결 안됐다" 결의안 제출」(『동아일보』 1999년 8월 25일); 「유엔소위, '맥두걸보고서 지지' 결의문」(『동아일보』 1999년 8월 23일).

24) 「美하원, 35분만에 위안부결의안 만장일치 통과」(『연합뉴스』 2007년 7월 31일).

25) 「美하원 통과 위안부 결의안 전문」(『연합뉴스』 2007년 7월 31일).

26) 「사설·日정부, EU의 '위안부 결의안' 안 들리나」(『세계일보』 2007년 12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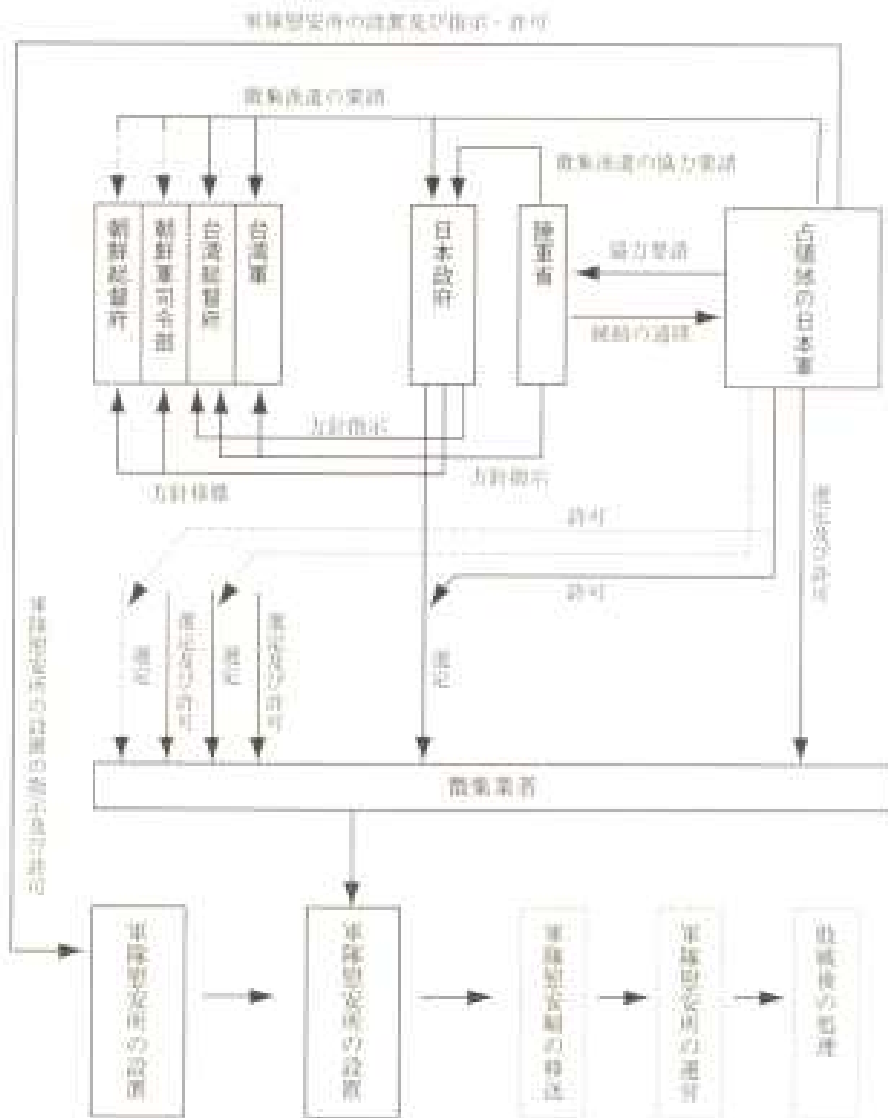
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일까? 그 근거는 국제법이다. 다시 말해 피해 개인이 가해국가를 상대로 개인보상을 직접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주장이다.²⁷⁾

한편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인정과 개인보상을 요구하는 근거 역시 국제법이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이 개인보상 요구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개인보상 불가의 근거가 되는 것은 누가 어떤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리라. 보편적인 상식을 반영하는 것이 법률이고 이에 법 해석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 이는 그 시대 시대마다 상식이 바뀌기 때문일 것이다. 동성애자의 결혼이 절대 허용되지 않던 사회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사회가 바뀌어가듯 우리들의 상식도 인권이라는 개념을 기축으로 변화해 간다고 할 수 있다. 위안부피해자의 개인보상과 관련된 국제법의 해석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국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가해국가에 대해 직접 개인보상을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은 학자에 따라 견해가 상반된다. 이처럼 입장에 따라 개인보상 요구 가능과 불가의 결론으로 상반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동일한 국제법을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인가 하는 우리들의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들이 어떠한 인권개념을 구축하고자 하는가, 미래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를 이끌어가고자 할 때 생각해야 할 기본 자세일 것이다.

27) 김명기, 『정신대와 국제법』(법지사, 1993.) 참조.

付
録

<概略図1—設置及び募集>
軍隊慰安所制度における日本政府と軍の統制監督の仕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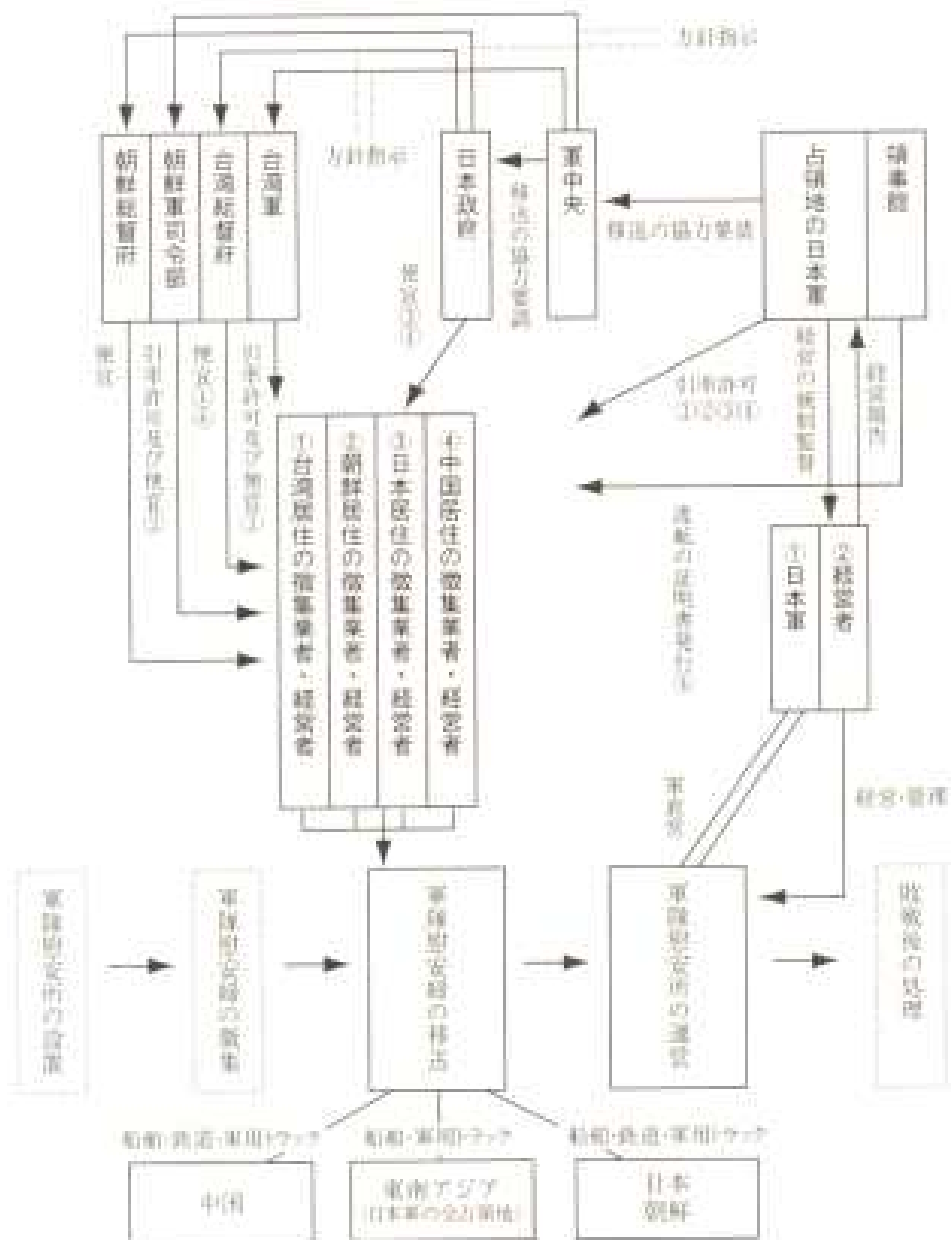


備考：①図中の流れは、資料が不足している点がある。
②本図の時期は、1939年7月4日陸軍省「軍隊慰安所(民間業者募集)に関する件」が通達された以後に設定する。

[별첨 자료 2] 이송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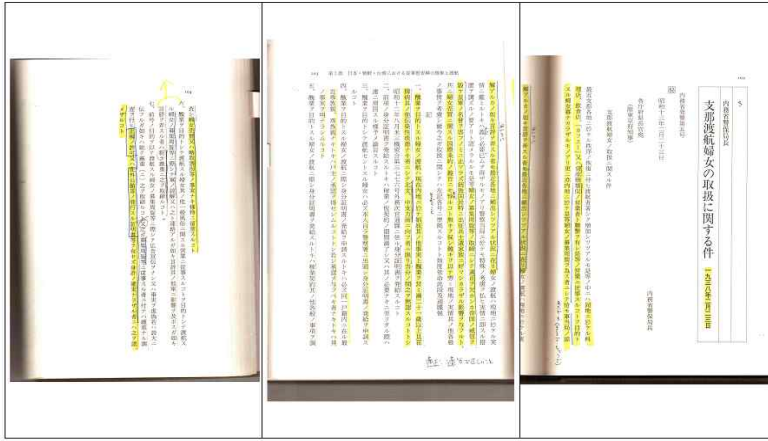
199 附 録

<概略図2—移送及び運営>
軍隊慰安所制度における日本政府と軍の統制監督の仕方



備考：(1)本図の占領地域は、資料が豊富でない部分である。
(2)本図は、調査を断片とし、資料で確認できたことに限定し、とくに移送に関しては主要な事項に限定している。

[별첨 자료 3]



내무성발경 제5호

1938년2월23일

내무성 경보국장

각청부현장관앞(除 동경부 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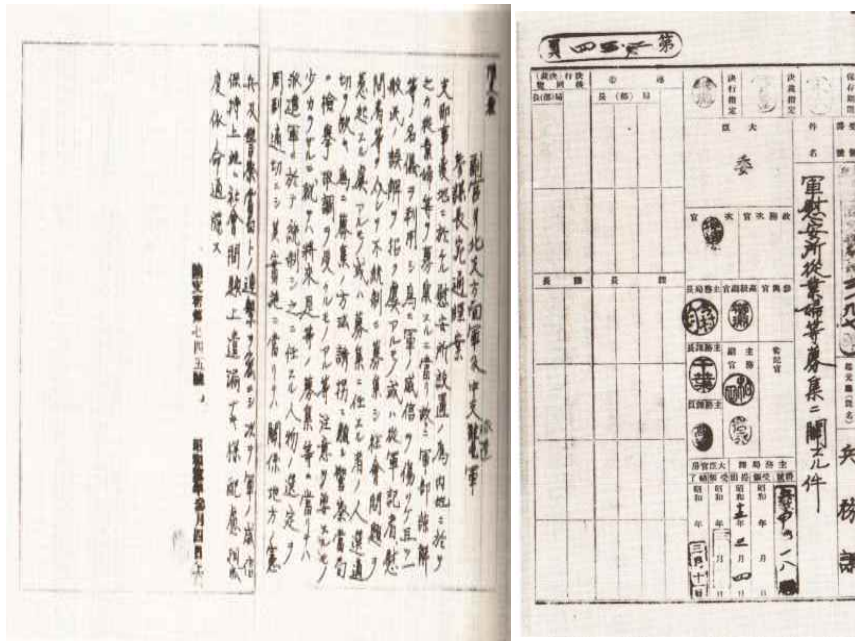
지나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최근 '지나'(支那) 각지에 질서 회복에 따라 도항자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동지(同地)에 요리점, 음식점, 카페 또는 대좌부와 유사한 영업자와 연계하고 이들의 영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도항하는 부녀가 적지 않다. 게다가 또한 '내지'(内地)에서 이들 부녀의 모집 주선을 하는 자가 마치 군 당국의 양해를 얻은 것처럼 말하는 자도 최근 각지에 빈번히 출몰하는 상황에 있다. 부녀의 도항은 현지 실정을 감안하면 생각건대 필요불가결한 것이 있어 경찰당국에서도 특별히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들 부녀의 모집 주선 등의 단속에 적절하지 않아서 제국의 위신을 훼손하고 황군의 명예에 손상시키고 이에 그치지 않고 충후국민 특히 출정 병사 유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부녀 매매에 관한 국제조약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게 하기가 어려우므로 한편으로는 현지의 실정 기타 각 방면의 사정을 고려하여 앞으로 이들 취급에 관해서는 좌기와 같이 각 호에 준거할 것을 명에 따라 통첩한다.

기(記)

1. 추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의 도향은 현재 내지에서 창기 기타 사실상의 추업을 하고 있는 만21세 이상의 화류병 기타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로 하고, 복지, 중지방면으로 향하는 자에 한해서 당분간 이를 묵인한다. 1937년 8월 米三機密合제3776호 외무차관 통첩에 의해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것
2. 전향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가업(稼業)의 가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귀국한다는 것을 미리 말해둘 것
3. 추업을 목적으로 도향하려는 부녀는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신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함
4. 추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의 도향에 있어서, 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반드시 호적내의 최근족친(最尊族親), 존족친(尊族親)이 없는 경우는 호주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 만일 승인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시할 것
5. 추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의 도향에 있어서,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가업 계약, 기타, 각각의 사항을 조사하고 부녀 매매 또는 약취 유괴 등 사실이 없도록 특히 유의할 것
6. 추업을 목적으로 도향하는 부녀, 기타 일반 풍속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향하는 부녀의 모집 주선 등에 대해서는 군의 양해 또는 군과 연락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 외 군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언사를 불사하는 자는 모두 엄중하게 이를 단속할 것
7. 전호의 목적으로 도향하는 부녀의 모집 주선 등에 관해서 광고 선전을 하고, 또는 사실을 허위 아니면 과대하게 전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모두 엄중하게 단속한다. 또한 이들 모집 주선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를 하여 정규 허가 또는 재외공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하지 말 것

[별첨 자료 4]



(일본군위안소제도 성립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문건)

군대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
1938년 3월 4일

기원청(起元廳) (課名) 병무과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

육지밀

부관으로부터 복지 방면군 및 중지 파견군 참모장 앞 통첩안

지나사변지에서 위안소 설치를 위해 내지에 있는 이들의 종업부 등을 모집함에 있어, 그런고로 군부양해 등의 명의를 이용하고 그럼으로써 군의 위신을 훼손하고 또한 일반민의 오해를 부를 염려가 있는 자 혹은 종군기자, 위문자 등을 매개로 통제하지 않고 모집하여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염려가 있는 자 혹은 모집에 임하는 자의 인선 적절하지 않아서 그로인해 모집의 방법, 유괴와 유사하고 경찰당국에 검거 취조 받는 등의 주의를 요하는 자가 적지 않음에 장래에 이러한 모집 등에 있어서는 파견군이 통제하고 이를 담당할 인물의 선정을 주도적절하게 하고 그의 실시에 있어서는 관계지방의 헌병 및 경찰 당국과의 연계를 긴밀히 하고 이로써 군의 위신 보지상 또한 사회문제 상 유감이 없도록 배려하기를 명에 의해 통첩함

[별첨 자료 5]

[전문]美 “위안부 결의안” 내용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에 대한 성적 서비스 목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공식 위임했으며,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 매춘 제도인 위안부는 집단 강간과 강제유산, 수치, 신체 절단과 사망 및 궁극적인 자살을 초래한 성적 폭행 등 잔학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 학교들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교과서들은 위안부 비극과 2차 대전 중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민간 관계자들은 최근 위안부의 고통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사과를 담은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위안부 관련 담화를 회색하거나 철회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21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협약에 서명하고 2000년 무력분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도 지지한 바 있다.

하원은 인간의 안전과 인권, 민주적 가치, 법치 및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한 지지 등 일본의 노력을 치하하며, 일본 관리들과 민간인들의 노력으로 1995년 민간 차원의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된 것을 치하한다.

다음은 미 하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1.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국가들과 태평양 제도를 식민지화하거나 전시에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 노예로 만든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를 한다면 종전에 발표한 성명의 진실성에 대해 되풀이되는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 정부는 일본군들이 위안부를 성 노예로 삼고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4.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위안부 권고를 따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세계일보> 2007년 6월 27일 (수)

3강 » 5.24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경과

서현 주(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경과

서현주¹⁾

1. 한·일 양국

□ 문제의 제기

○ 배경

- 여성연구자(윤정옥)의 역사적 책임 의식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70년대부터 '기생관광'문제 제기
- 진보적 여성운동단체 : '70-80년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성장

○ 1990. 5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 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연명으로 일본정부에 대해 정신대 문제 진상 규명과 사죄 요구 설명서 발표

○ 1990.10.17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 37개 여성단체, 한·일 정부에 공개서한 발송

○ 1990.11.1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으로 약칭) 결성(37개 여성단체와 개인으로 구성)

○ 1991.4.24 주한일본대사관, 정대협 대표들에게 “조사했으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사죄 등은 할 수 없다. 보상문제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되었다”고 설명

○ 1991.5.18 일본 오사카에서 '조선인 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발족

○ 1991.7.18 정대협, 한국 국회에 정신대문제에 관한 6항목 청구사항 실현을 위해 한국정부의 협력을 요청하는 청원서 제출

○ 1991.8.14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고백

○ 1991.9.18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무실에 '정신대신고전화' 개설

○ 1991.12.6 김학순 등 3명의 전 일본군 '위안부'와 군인·군속과 그 유족 3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보상청구소송 제소

1)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991.12. 6 가토 관방장관
 - 정부가 관여했다고 하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함.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었던 한국인 여성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는 대처하기 곤란하다"며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 밝힘
- 1992.1.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시작
- 1992.1.10 요시미 요시아키(주오대)교수가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통제 등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에서 발견했다고 보도
- 1992.1. 13 가토 관방장관
 - "방위청에서 발견된 자료를 비롯해 관계자들의 증언과 이미 보도된 미군 자료를 보면 일본군 '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의 경영 등에 구일본군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생각한다."
 -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체결된 조약이나 협정의 해석으로는 한·일 간의 보상 문제는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
- 1992.1.14 도쿄에서 12개 여성단체가 '중군위안부문제 행동네트워크' 조직, 미야자와 총리 방한을 앞두고 대일정부행동 요청
- 1992.2.25 한국정부, 전국 시·구청에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 1992.7.6 일본정부의 1차 조사결과 공표
 - 정부 관여 인정,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음
- 1992.7.31 한국정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발표, '위안부' 모집과정에서 위압적인 분위기에 의한 방법, 사실상의 동원이 있었음을 지적
- 1992.10.30 나눔의 집 개소(강덕경, 노침자, 이용녀 입소)
- 1993.3.13 김영삼대통령, "일본정부에 물질적 요구 않겠다"고 발언
- 1993. 8 4. 일본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 군과 관헌의 관여와 징집·사역에서의 강제 인정,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승인.
 - 그러나 위안부의 징집 및 위안소제도의 운용 주체가 민간업자로 이해될 여지 남김

□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창설과 입법 활동

- 1994.8.31 무라야마 일 총리, 평화우호교류계획 및 민간위로기금안에 관한 담화 발표
- 1995.7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으로 약칭) 발족
 - 국민모금(6억엔), 정부출연금 14억엔, 정부보조금 28억엔 합계 48억엔의 기금 마련
 - 위안부 피해자 1인당 200만엔의 위로금 지불, 의료·복지지원 사업, 사과와 반성

의 마음을 표현한 총리 편지 전달(한국, 필리핀, 대만의 285명을 대상으로)

- 인도네시아에서는 69개의 고령자 복지시설 건설, 위안부 14명이 입소
- 네덜란드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개선 지원 사업 실시(2억 4500만엔의 예산으로 79명에게 지원)
-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법적 책임 불인정, 배상이 아닌 민간차원의 위로금으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국민기금 활동 반대
 - ※ 한국정부는 1993.6.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 피해자들에게 지원금 지급 개시. 2012년 현재 일시금 4,300만원 및 매월 생활지원금 953천원, 간병비 1,200만원 지급
- o 1996.6 모토오카 쇼지의원 등 일 참의원 24명이 국회에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조사회 설치 법안」 제출
- o 1996.10.18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국내모금 시작. 이후 '97.5.28 해산시까지 5억 6천만원 모금
- o 1997.1.11 일본 국민기금, 한국인 피해자 7명에게 위로금 200만엔과 의료복지금 300만엔 목록과 하시모토총리의 사과편지 전달
- o 1997.1.13 한국 유종하 외무부장관, '위안부'에 대한 개인배상이 필요하다는 의향 표명, 정대협 1.11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 o 1997.8.11-10.10 문화방송 등이 정신대할머니 지키기 2차 모금, 4억 7천여만원 모금
- o 1998.5.7 한국정부,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금 3,150만원 지급(정대협 2차모금 410만 8천원 별도 지급)
- o 1998.10.7 김대중대통령 일 잡지 '세계'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기금 반대 입장 표명
- o 2001.3.21 일본의 민주당·사민당·공산당 참의원이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의 해결의 추진에 대한 법률안' 단일안 상정
 - 법안 작성에 즈음하여 한국 운동단체의 의견 경청
 - 정부에 의한 사죄, 개인보상, 진상조사의 계속 추진, 차세대 교육 등이 주요내용
- o 2007.3 국민기금 해산
- o 2008.6 '촉진법안' 8번째 참의원 제출, 회기 종료와 함께 폐안 처리

□ 박물관 건립

- o 2004.12.16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위원회 발족
- o 2006.10.19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부지 확정(서대문독립공원 내 매점부지) 및 건립설명회 개최
- o 2008.11.3 광복회 등 32개 독립운동단체, 독립운동의 '성지'인 서대문독립공원 내

에 박물관을 건축하는 것은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을 더럽히는 순국선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백지화 요구

- 정대협 등 국내 단체·개인, 일본 등 여러 해외 여성단체·개인, 광복회 성명에 대한 항의와 건설추진을 위한 성명서 발표
- o 2011.2.15 정대협 총회 및 박물관건립위원회에서 박물관 건립방향 수정.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서대문 독립공원 부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올바르게 세워질 때 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새로운 부지에서 우선적으로 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
- o 2012.5.5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마포구 성미산) 개관

□ 헌법소원과 현재의 위헌 판결

- o 2005.8.27 한국정부, 한일협정 문서 공개. "일본군 '위안부', 원폭피해자, 사할린 억류자는 한일청구권에 포함되지 않음.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남아 있음. 추궁할 것" 발표
- o 2006.7.5 일본군 '위안부' 109명, 헌법재판소에 한국외교통상부를 헌법위반으로 헌법소원
- o 2011.8.30 한국헌법재판소, '05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함으로써 협정에 대한 한·일간 해석 상 분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상 분쟁을 동 협정 제3조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결
- o 2011.9.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죄하고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외교적 대책을 조속 강구하라"고 발표
- o 2011.9.15 한국정부,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양자 협의 제안(11.15 구상서 재차 전달)
- o 2011.12.1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000차 수요시위 개최(한국 30개 도시, 해외 9개국 44개 도시)
- o 2011.12.18 이명박 대통령,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우선 해결 촉구, 이에 대해 노다 총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지혜를 내겠다."고 답변
- o 2012.1.5 김성한 외교통상부 장관,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해 보고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시점에서 중재절차로 넘어갈 생각"
- o 2012.3.1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군대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여러 현

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며 일본 정부에 보다 적극적 해결 자세 촉구

- 이날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 이명박 대통령의 3.1 기념사 발표 후 "이미 해결이 끝난 청구권 문제와 별도로 …… 향후에도 무엇이 가능한 것인지 지혜를 모아 검토를 계속 해 나가겠다." 고 함

2. 국제사회의 여론 형성

□ UN·ILO 등 국제기구

- o 1992.4 정대협, 유엔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 참가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기
- o 1994.11.22 ICJ(국제법률가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종보고서 공표
 - 위안부 피해자에게 개인보상청구권이 있음. 일 정부에게 행정기관의 설치·입법 조치·중재재판에 응하라고 권고
- o 1996.2 ILO 전문가 위원회, 일본군 위안부는 ILO 협약 29조(강제노동금지)위반이라고 판단, 일본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촉구
- o 1996.4 UN 인권위원회,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등 6개 항목의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한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공인
- o 1998.8 UN 인권소위원회의 맥두갈 보고서, 위안부문제는 명백한 국제법위반,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은 물론 책임 있는 개인의 형사책임까지 요구
- o 2001 UN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본정부 보고서 심사 : '국민기금'으로는 충분하지 못함. '위안부'를 대표하는 조직과의 사이에서 희생자의 기대에 따르는 보상 방법에 대해 협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o 2008 UN 인권이사회 각국 인권 상황 정례 검토 보고서 :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과 고문방지위원회 권고에 성실하게 답하라
- o 2008.10.30 UN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사 보고서 : '위안부' 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죄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법적·행정적 수단을 강구해 보상해야 함
- o 2009.9.22 국제엠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 일본 하토야마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적극 해결과 입법해결을 요청하는 서신 발송
- o 2010.6.7 UN 인권이사회 라쉬다 만주(Rashida Manjoo)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여성폭력에 대한 배상 보고서'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 책임 강조

□ 각국 의회 결의안

- 2007년 미 의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이후 각국 의회의 결의가 이어짐
- 미 하원 결의안(2007.7.30) : 총리의 공식 성명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 네덜란드 의회 결의안(2007.11.20) : 일본정부가 직접 도덕적 사죄를 하고 재정적 보상 제시, 학교 교재가 '위안부'의 진실을 제공하도록 장려
- 유럽의회 결의안(2007.12.13) :
 - 국민기금이 '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은 환영하나, 이러한 인도주의적 술선수범이 국제법상의 법적 인정 및 배상에 대한 희생자들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
 -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법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사과·수용
 - 일본정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국내법에서 명확히 인정되어야 함
- 대만입법원(2008.11.11)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

3. 국제 연대

- 제1회 '정신대문제아시아연대회의' 개최(1992.8.10-11)
 - 한국, 필리핀, 대만, 태국, 홍콩, 일본 등 6개국 참가
 - 이후 '11.8.12-14 제10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2-3년을 주기로 회의를 열어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각국 혹은 국제연대를 통해 진행해 온 활동의 성과를 확산, 계승하기 위해 노력
-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 2000. 12. 7 ~ 12, 일본 동경에서 열린 민간법정
 - 일본정부의 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재판과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으로 구성
 - 히로히토 천황 및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9명의 고위 관료·장성에게 유죄판결, 일본정부에 피해자 배상 권고
 - 가해국 여성의 제안과 피해국 여성들의 제휴, 국제법학자·역사학자의 협력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 국경을 넘어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이 착수하여 이루어냄
- '민족주의'라는 고정된 장애 정박하지 않고 유동하면서 지역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지구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초국적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줌. 특히 지구화시대에 포스트 / 식민성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을 놓치지 않으면서 전 지구적 연대의 틀을 마련(이나영)

4. 쟁점

□ 국민기금

○ 국민기금에 반대한 정대협 활동에 대해

- 반일 내셔널리즘 : 오누마 야스아키
- 정의의 폭력, 비관용적인 정의, 일본에 대한 본질주의적 불신이 원인 : 박유하
- 본질주의적 불신이라기 보다는 운동의 목표에서 나오는 태도 / 국민기금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배상(법적인 책임)이 없었기 때문 : 야마시다 영애 / 김부자

□ 페미니즘, 민족주의, 식민주의

○ ‘여성문제’ 인가 ‘민족문제’인가

- 국제사회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성노예제와 강제사역으로 개념화되면서 역사적 특수성을 사상한 전시하 여성폭력의 문제로 범주화됨. 이러한 ‘여성’ 문제로의 전략적 범주화에 기반한 운동방식은 복수의 군 ‘위안부’ 피해국 간 차이를 역사화하지 못했으며, 각국의 피해·생존자들의 특수한 위치를 맥락화 하는데 실패 : 정진성
- 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위안부’ 운동에서 ‘위안부’ 이슈가 일차적으로 민족문제로 상징되었기에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전형화되고, 위안부 이슈에 교차한 계급, 젠더 등의 차원들이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함 : 김정란

○ 페미니즘, 민족주의, 식민주의의 관계성

- ‘위안부’ 문제·제도를 ‘여성 억압이 기본’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 문제·제도를 ‘남성의 여성에 대한 보편적인 폭력(보편적인 젠더 폭력)’ 일반적으로 해소해 버리는 것이며, ‘일본국민에 의해 종속화되어 버린 문화와 민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었다(요네야마 리사)의 시점을 간과할 위험이 있음
- 젠더, 민족, 계급 등의 변수의 중층적인 작용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좀 더 강력한 규정력을 갖는지를 꼼꼼하게 고찰해야. 운동의 방법론에서는 ‘내셔널리즘적 틀 만들기’라는 차이에 입각한 다음, 국경을 초월한 ‘페미니즘적인 연대’를 추구해야 할 것(김부자)

4강» 5.31

사할린 한인,
내가 네 품에 안길 때까지

방일권(한국외국어대학교)

내가 네 품에 안길 때까지

방일권¹⁾

‘동토의 땅’ 남사할린에서 벌어진 ‘비극’은 20세기 한국이 경험한 역사적 경험의 축소판처럼 느껴져 우리의 마음을 늘 무겁게 만든다. 사할린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북위 50도 이남의 ‘가라후토(樺太)’를 할양받은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근본적으로 사할린 한인 문제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총동원 정책으로 출발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패전 이후 한인에 대한 일제의 방기, 소련 시절의 억류와 이 기간 동안 이들의 귀환 문제에 대해 보여준 한국 정부의 무관심, 그리고 억류 기간과 1990년대 이후 영주귀국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경험들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한일간에는 한인(‘조선인’)의 사할린 강제동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억류와 귀환의 문제에 관한 엇갈린 시각들이 존재한다. 우리 측이 사할린 한인들을 강제동원과 억류라는 이중의 고통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데 비해 일본은 ‘조선인’의 자발적인 이주의 동기가 된 원인들(한반도의 빈곤상황과 식민지적 피지배 상태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사할린 한인의 억류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라는 세계사적 조류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일본인으로 규정되어 억류된 한인들의 국적 문제나 피동원자에 대한 배상(소위 ‘보상’)으로 일컬어지는 노동의 대가에 대한 개인청구권 문제)의 사안 역시 논란거리이다. 아울러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를 의미하는 사할린 한인 1세대에 대한 영주귀국 사업이 2010년으로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영주귀국자에 대한 인권과 처우의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반성과 새로운 단계의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빈번하게 들리고 있다. 20여년에 걸친 영주귀국 사업을 추진해 온 우리 정부에게 앞으로의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현안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사할린 한인들을 덮친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은 일본에 있고 부차적으로 이들을 귀환시키지 않았던 소련의 책임도 두드러진다. 하지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적어도 1990년까지 조국인 대한민국도 무관심으로 일관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1948년 국적법, 1965년 한일회담, 1970년대 초의 일부 사할린 한인에 대한 귀환 시도 등에서 사할린 한인들은 국외자로 남아 있었다. 이런 사실의 일부는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연구를 기다리

1) 한국의국어대학교 연구교수

는 주제들이 적지 않다.

보다 잘 알려진 영주귀국 사업은 어떠한가? 한소 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 9월 30일을 기점으로 사할린 한인의 문제는 국내 지면에 자주 소개되었고 결국 영주귀국 사업까지 구체화되었다. 2012년 현재 안산 고향마을을 필두로 전국에 모두 21개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단지가 조성되어 약 4천명에 가까운 한인들이 귀국해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약 600명 내외의 1세대 미귀국자들을 제외하면 1945년 해방 당시 사할린에 살았던 한인들은 모두 고국으로 귀환한 셈이다.

하지만, 귀환 사업이 20년을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영주귀국’이라는 고국의 부름에 응답한 대가로 1세대는 현지의 가족과 이별하여 당사자들만의 외로운 노년을 게토화된 단지에서 지내야 하며, 노령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노동의 제한을 감수해야 한다. 이중국적자가 됨으로써 그간 쌓아놓은 현지의 재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도 있다. 영주귀국의 이 같은 ‘비인도적’ 측면을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가?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사업부터 추진했던 우리 정부는 사실상 2005년부터 사할린 한인의 강제동원에 관련된 여러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1만여 건에 달하는 강제동원 피해 판정을 거의 마무리했고, 일제 시기 사할린 한인의 비극을 대표하는 ‘이중징용’ 및 2건의 조선인 학살 사건 등의 사건들과 사할린 강제동원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들도 발표했다. 하지만 동원의 실상을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고 역사적 의문과 현안들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많은 연구와 자료 확보, 그리고 더 많은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물론 진일보한 성과도 있다. 대표적으로 사할린 강제동원의 희생자들에 대해 억류된 기간(현재로서는 한소 수교 시점)까지 포함시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예다. 위로금 지급 대상은 국내 유족과 한국적을 받은 동포를 가리지 않는다.

이 같은 관심의 증대와 영주귀국 및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지원 등의 사업으로 사할린 한인 문제는 부분적으로나마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왜 우리는 사할린 동포들을 귀환시켜야 하는가’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거기에는 사할린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경험했고,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으며,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어떤 과거청산을 해야 하는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복잡하고 거창한 논리보다 차라리 개인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자.

□ 사할린에서 온 편지

김종수(金宗守)가 박노학 화태역류귀환한국인회 회장에게 보내 온 1976.3.30(소인 기준)자 편지에서

본인은 무식자로서 1944년 11월까지 부산시에서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매 가정에서 1명씩은 꼭 징용(徵用)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선 총독의 명령에 의하여 강제로 2년간의 기한(期限)을 받고 사할린으로 왔습니다. 내가 올 때 우리 일행의 대원(隊員)은 180명이었으며 인솔자수는 3명이었습니다. ... 우리들이 도망칠까 하여 인솔자들의 감시가 대단히 엄중하였습니다. 도착 당시의 주소는 혼토(本斗)군 나이호로(內幌)쫘(丁)²⁾ 탄광이었고 작업은 토목부로 일하였으며, 작업시간은 하루(一日)에 10시간 내지 12시간이었으며, 노동 임금은 하루에 2엔 50전(錢) 내지 3엔씩이었으므로 부산에서 떠날 때에 계약은 5엔 내지 7엔이라 하였는데 무슨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질문하였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중노동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서 ... 하루쯤 쉬고 싶어도 간부(幹部人)들이 허가치 않음으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감옥살이와 같은 탄광 생활을 하다가 일본 황제가 전쟁에서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그동안 그림던 부모형제와 처자를 상봉하게 되었다는 벅찬 마음으로 하늘을 뛰어 오를 것만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

... 우리들을 강제로 이곳으로 끌고 와서 부려먹다가 종전이 되어 자기들의 국민만 귀국시키고 우리들의 귀국문제는 묵과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나는 적개심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본인은 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30여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도록 한 번도 상봉치 못한 처자와 상봉하여서 여생을 보낼까 하는 바이올시다.

2) 町の 오자로 보인다.

□ 1973-74 사할린 동포 귀환교섭

- 외교부 공개문서 중

관리
번호 74/302

~~III급비밀~~

외 부 부
보 고 사 항

북일 700- 709

1974 . 5 . 3 . .

수 신 : 대 통 령 각 하

국 부 총 리 각 하 1975. 12. 31 외교부
의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됨

계 목 : 재사할린 동포 귀환 교섭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1. 본건은 북일 700-421(74. 4. 16.) 및 북일 700-23(74. 1. 24.) 보고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검열
1974. 5. 31
외무부
2. 최근 일본정부가 한국 정적을 희망한다고 하는 201명의 재사할린 한국
인을 아국에서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해 온데 대하여 당부에서는 관계부처
와의 협의를 거쳐 1974. 5. 2. 구술석보 이들에게 입국을 허가하기로
통보하였습니다. 검 토 필 (1974. 6. 30) 인
3. 당부에서는 앞으로 본건 사할린 동포의 송환 합계 7명 가능 하는 한편,
이들이 아국으로 돌아오게 될 경우에 대미인 사후대책에 관하여
부처와 합계 7명

검 토 필 (1974. 6. 30) 인

보통문서로 재분류 (1975. 12. 31)

동북아 1과	양고재	74년 5월 31일	담담	과장	국장	차관보	차관	장관
			한	홍	홍			

~~III급비밀~~

□ 내가 네 품에 안길 때까지

『검은 대륙으로 끌려간 조선인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 중

사랑하는 아우야! ○○아! 지금 너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느냐? ... 가지 못하는 이 사실을 어이하리! 정말이지 어떻게 한단 말이냐? ... 고향의 마을 - 한오리의 신작로와 돌아가는 연자방아, 그리고 커다란 느티나무를 회상하면서 펜으로 네 이름을 불러 부모를 회상할 때 가지 못하는 고향을 머리 속에만 간직한 내 가슴은 설게도 우는구나! ...

내가 이 싸할린이란 땅으로 그 소위 산업보국대원이란 명목으로 떠나올 때 너는 16세의 소년이었다. 내가 하는 작별 인사에 아버지는 긴 한숨과 함께 대답이 없으셨고 마을 앞 연자방아간까지 따라 나온 어머니는 목이메여 말도 못하셨으며, 철없던 너는 ... 우리들의 이별을 눈물로 표현하였으나, 나는 빼뚫어진 운명의 길을 내게다가 들이댄 힘에 대하여 어데까지라도 싸워보리라는 결심과 함께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으며, 입을 딱 다문 채 응당 가야할 길을 떠나야 하는 것처럼 굳센 발걸음으로 떠나왔던 것이다.

그후 15년. 싸할린의 흙을 이리저리 밟은 내 발자욱이 일직선으로 목적을 향한 코스를 건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지금껏 자신이 조선사람으로써의 길을 탈선하지 않은 것만은 누구에게나 맹세할 수 있단다. 험벗고 못 먹고 건강의 장애로 경제적 토대를 상실한 나는 ‘이(利)’의 세상에서는 확실히 신용없는 사람이 된 것만은 사실이나 정신의 세계에서는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아우야! ... **는? **하고 불러보는 내 마음은 확실히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다 들킨 사람, 하나밖에 없는 양심을 팔아먹으려다 들킨 사람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의 감을 어찌지 못하겠구나. 생후 6개월만에 애미를 이별하고 다섯 살에 애비와 작별한 **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육친은 삼촌인 너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

내가 싸할린으로 떠나올 때에 ... **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으며, 우리 어머니가 네 애미에게 가보라고 하면 비슬비슬 뒷걸음질만 하다가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내 서울만 가 있고 집에는 싸할린에 갈 립시에만 와 있던 나는 **를 제 자식이라고 한 번도 안아는 커녕 다정스레 불러보지도 못하였으니 **에게 있어서는 나의 존재가 확실히 이방인보다도 낯선 사람이었으리라!

...48년도에 온 네 편지에서 ... **가 ‘아버님 전상서’라고 붉은 줄을 친 인찰지에다 네모 반듯반듯

한 글자를 꼭꼭 박아 쓴 두 장의 편지는 내 자신의 가슴을 쥐여 뜯는 것 같은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였던 것이다. ...

사랑하는 아우야! 나는 이렇게 **에게 있어서 애비노릇을 못한 사람이다. 아니 애비 노릇을 못한 게 아니라 애비가 아닐 것이다. ... 나아가 애비가 아닌 나는 남보다도 못한 다시 말하자면 ... 원수일찌도 모른다. 그러나 **는 나를 ‘아버지!’ 하고 편지에다 불렀고 나 역시 깊은 회오 속에서 무척도 그립고 한없이도 보고져 한단다. 그러나 우리들은 만날 수가 없구나! ...

사랑하는 아우야! ○○야! 보고 싶구나, 만나고 싶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이가 네가, 그리고 **가, 철이가 -- ...

이제까지 쓴 이 문제들은 누구든지 볼 때에 내 일신상의 사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나 이것은 내 일신상의 사정인 동시에 또한 싸할린에 거주하는 전 조선 사람들의 사정인 것이다. ... 이것은 내 하나의 목소리인 동시에 싸할린에 있는 삼만명 조선인의 목소리인 것이다.

야! 고향야! 한오리의 신작로며 돌아가는 연자방아야! 느티나무야! 내가 나를 부를 때까지, 내가 네 품에 안길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아 있어야 할 터인데...

부모나 형제 자매 처자는 직접 우리들의 육체의 일부분이다. 이 육체의 부분들을 뜯기운지 무릇 15년 - 이렇게 정신의 불구자가 된 우리들은 이렇게 한 평생 불구자로 있다가 낯선 이역, 이 싸할린의 땅에서 한 줌 흙으로 변해야 한단 말이나?

우리들도 사람이다. ... 우리들도 개나 돼지가 아니고 사람이란다. 그러기에 “아버지! 어머니!” 하고 한번 불러보자! ... “아들아! 딸아! 귀여운 내 자식들아!”하고 불러보자! 종이 위에다 펜으로만 불러볼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바람결에 공간을 향하여 불러볼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얼싸안고 한번 불러보자! 우리들의 인간으로써의 이 권리를 어느 놈이 빼앗으려고 하느냐? 안될 것이다. ... 게여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게여히 만나보고 불러보고 말 것이다.

고향이여! 한오리의 신작로여! 연자방아야! 느티나무야!

아버지! 어머니! 누님! ○○야! **야! 철야! 그리고 모든 벗들이여! 정든 산천이여! 고향의 땅야! 조국야!!! 정신분열증의 환자가 되기는 내 죽어도 싫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살아 있어서 내 육체의 한 부분인 그대들을 꼭 찾고야 말 것이리라! 만나보고야 말 것이리라!!!

5강» 6.7

한국 원폭2세
환우 김형률의 박해인권운동

전진성(부산교육대학교)

한국 원폭2세 환우 김형률의 반핵인권운동

전진성¹⁾

한국 원폭2세 환우회 김형률(金亨律) 회장은 1970년 6월25일생으로, 만 서른다섯을 앞둔 2005년 5월29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약 3년 전인 2002년 3월22일, '한국청년연합회(KYC)' 대구지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자신이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한 어머니를 둔 원폭2세로서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2003년 8월5일 총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원폭2세 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는 원폭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 앞장섰으며, 2005년 일본 동경에서 열린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 협의회'에 참석했다. 동경에 다녀온 닷새 만에 그는 피를 토하고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동경에 다녀올 때쯤 그는 원폭 후유증인 폐렴 증세로 이미 정상적 폐 기능의 80%를 잃은 상태였다.

그간 TV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이들 희생자 대부분은 경상남도 합천과 경기도 평택에서 건너간 사람들로 일제 수탈에 따른 경제적 곤궁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전시의 강제부역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원폭 현장에 있게 된 사람들이었다. 생존자의 대부분은 귀향했으나 고국으로부터 아무런 의료적, 경제적, 정신적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질병과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살아왔다. 한국 원폭피해자들은 피폭 후 20여년이 지난 1967년에 와서야 비로소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를 결성(1971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로 개칭)하여 끈질긴 권리투쟁을 벌였으나 계속되는 세상의 무관심을 타파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또다시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결국 피폭 후 어언 6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한 병약한 젊은이가 나타나 원폭의 고통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것이다.

2002년 김형률의 '커밍아웃'과 이후에 전개된 활동들이 주목받은 것은 그의 요구가 단순한 '탄원'의 차원을 넘어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한 개인, 한 가족의 문제로 축소시키기를 거부하고 역사적 상흔(傷痕)으로 자리매김했다.

1)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그는 자신처럼 아픈 원폭 피해자들이 고통의 참된 원인을 인식할 수 없도록 내면적으로 길들여졌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억압의 구조화”를 타파할 수 있기를 염원했으며 이 일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지 피해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핵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평화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김형률은 이처럼 자신의 문제를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이슈로 삼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는데, 그의 주장이 보다 많은 공감을 얻게 된 것은 거꾸로 그것이 역사나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실존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그의 병약한 몸은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다. 원폭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통해 고스란히 재생된다. 일본 제국주의가 저질렀던 침략전쟁과 식민지 수탈정책은 역사적 의미라는 추상적 차원을 넘어, 후손들의 ‘몸’에 생생하게 현존한다. 김형률 같은 원폭2세 환우들은 자신이 원자폭탄에 피폭당한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에 의해 전 생애가 구속되었다.

직접적인 피폭을 경험하지 않고도 한 평생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은 유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원폭2세 환우’라는 명칭은 원폭 피해자의 자녀들이 갖는 병이 각 개인의 우연적인 질환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피폭에 의한 유전임을 웅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원폭2세 환우의 존재를 발설하는 것은 금기를 깨뜨리는 지극히 도발적인 행위임에 분명했다.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떠맡아야 할 경제적, 도의적 부담뿐만 아니라 아프지 않은 원폭2세들이 혹여 받을지 모를 사회적 차별의 문제까지도 개입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형률은 과감히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싶다”고 부르짖었다.

그는 원폭 피해자 문제를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제로 보았다. 가장 소외받은 자의 인권이야말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인권이라는 것, 다시 말해 경제적 빈궁이나 사회적 차별보다 더욱 시급히 타파되어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을 유지할 권리의 박탈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원폭2세 환우의 문제야말로 원폭피해자 문제의 핵심이며 그것에 고유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김형률의 반핵인권운동은 그간 언론방송에 많이 소개되었다. 시사저널 정희상 전문기자의 2002년 시사저널 8.15특집 기사 「원폭 피해2·3세 커밍아웃」은 김형률을 처음으로 집중보도하여 원폭피해자들 내부에까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김형률은 2003년 들어 운동을 본격화하면서 각 방송국 PD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그래서 많은 취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2004년 8월 KBS 2TV 추적60분의 「해방59년 끝나지 않은 식민지의 고통-원폭2세」, 진주 MBC 다큐멘터리 「원폭60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 KBS 1TV 취재파일 4321의 「아물지 않은 상흔」, 그리고 2005년에 들어 2월14일 KBS, MBC 밤9시 뉴스, SBS 밤8시 뉴스, YTN 24시간 뉴스에 보도되고, 2월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2월26일 서울신문의 「60년만의 ‘원폭

2세 실태조사' 그 후」, 시사저널 3월호, 제801호, 「대물림 천형의 한 어디다 호소하나」, 3월2일 KBS 밤 9시뉴스의 「'원폭 피해 2세' 방치할 것인가?」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하여 김형률은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겨레신문의 「왜냐면」란에 투고하여 의식 있는 사람들의 뇌리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한국 원폭2세 환우 문제는 일제 과거사 청산과 미국 정부의 책임, 방사능과 유전문제, 인권회복과 명예회복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시민단체들과의 사회적인 연대를 맺는 일이 대단히 중요했다. 김형률은 2000년대 초반기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가 전개한 운동의 이모저모를 살피는 일은 2000년대 초반기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횡단면을 그어보는 일과 같다. 외부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의 운동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주요한 시민사회 세력을 결집시켜 많은 이목을 끌 수 있었기에 사뭇 부러워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김형률은 인간 삶의 마지막 보루인 '몸'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사상과 실천을 이끌어내었다. 모든 것은 몸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왜 나는 끊임없이 아프는가?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 최소한 아픔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니 아프더라도 괘시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근본적으로 바꾸어가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이 지극히 솔직한 물음에서 출발하였기에 그의 사상과 실천은 '진정성'이 있었다.

김형률이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서고자 했던 사람들은 바로 한국 원폭2세 환우들이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김형률은 자신의 남은 삶을 바쳤다. 자신의 삶을 계속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환우들의 삶을 계속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할 기로에 섰을 때 그는 서슴없이 후자를 선택했다. 김형률이 보기에 반핵인권운동은 오직 환우회가 올곧게 서있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었다. 환우들은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양심 있는 세력들을 규합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환우의 권리를 대신 책임져줄 수는 없다.

아프다는 사실이야말로 김형률이 운동을 하는 이유였다. 아픔을 종식시키는 것은 그 운동의 목표였다. 그는 자신의 운동을 "인권회복운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인권'의 가치에 대해 누구보다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볼 때, 그간 한국사회는 사생활에 관한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시민사회 운동들이 1987년 이래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일정한 정도 사회에 뿌리내리게 되었으나, 그에 비례하여 사회구성원의 질적인 삶을 규정하는 '사회적 기본권'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김형률은 한국 원폭2세 환우회의 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뒤늦게 꽃피고 있는 소수자들의 인권회복 운동, 즉 장애인, 여성, 청소년, 동성애자 운동 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까지 찾아보았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

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인데 여기에는 사회보장수급권, 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보건권 등이 포함된다. 김형률은 사회적 기본권의 가치에 대해 확고한 의식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기본권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 없이는 사회적 기본권도 유명무실할 뿐인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권'이었다. 그는 생명권을 '인신(人身)의 자유'라는 법률적 범주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했다. 즉 그것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명시된 바처럼,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를 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운동이 다른 무엇보다 생명권을 수호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회적 차별의 철폐, 그리고 평화의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형률의 운동은 최종의 순간까지 애초의 문제의식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환우와 환우 가족들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었지만, 김형률의 투쟁은 정작 그의 가족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일 수 있었다. 이 점을 항상 김형률은 안타까워했다. 김형률은 원폭2세 환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사안이다. 김형률은 단지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구호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부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였다.

김형률의 반핵인권운동이 지향한 바를 가장 체계적이고도 명료하게 담고 있는 것은 그가 생애의 최후 단계에서 죽음을 불사해 입법화하려 했던 특별 법안이다. 2005년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가칭 「한국원자폭탄피해자와 원자폭탄2세환우 등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조문목차를 준비한 상태에서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후에도 특별법 제정 운동은 계속되었다. 2005년 8월4일 민주노동당 조승수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국인 원자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조 의원은 김형률 문제 해결에 가장 열의를 보인 정치인으로, 이미 2005년 6월16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등 79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원폭피해자 진상 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하고 빛을 바래고 말았다.

특별 법안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항목은 단연 의료지원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적십자 병원을 원폭피해자 지정병원으로 지정한 것 외에는 어떠한 법적·제도적인 보호도 하지 않은 채 원폭피해자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전가해왔다. 김형률은 이를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무책임하게 미일 공동의 '피폭2세 건강영향조사'에만 기대왔던 정부는 유전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그들의 결론을 빌미로 이제는 완전히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고 있다. 과학을 책임 회피의 도구로 삼는 한미일 정부의 알곡한 행태에 대해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2007년 8월7일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응수한 적이 있다. "원폭피해자 2세의 유병률이 왜 일반 사람들보

다 100배나 높은가? 그게 원폭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보라.”

김형률은 특별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2005년 2월14일 공식 발표된 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여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의료지원이 실태조사 후로 미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폭피해자들의 건강은 면밀한 조사와 법적 공방을 기다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김형률이 제시했던 ‘선 지원 후 규명’의 해법이 지체 없이 적용되어야한다.

의료지원과 함께 눈여겨볼 항목이 바로 기념과 교육 사업이다. 전반적인 사회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원폭피해자를 있게 한 역사를 규명하고 기억하는 사업이다. 이는 의료지원이나 사회복지만큼 시급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사업 없이는 원폭피해자의 인권은 궁극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김형률은 생전에 히로시마식 기념사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일본 정부를 포함한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일본인의 국민적인 피해 경험이며 동시에 인류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라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전 세계에 대해 반핵과 평화를 호소하는 국민적 사명을 가진다고 믿고 있다. 여기서 미국의 원폭 투하를 자초한 책임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동시에 식민지 지배와 전쟁 동원 등에 대한 일본의 가해 책임도 은근슬쩍 감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위 일본 식 ‘피폭 민족주의’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먼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한다. 그 래야 일본도 정신 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피폭자원호법’과는 달리 한국의 특별법은 ‘간접원폭피해자’인 원폭2세 환우를 범조문에 명문화하고 그 존재의 뿌리를 밝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어떠한 핵무기의 위협에 대해서도 안전한 사회적 방어망을 이룰 수 있어야한다. 특별법에는 진상조사와 더불어 기념사업이 포함되어있다. 김형률은 ‘한국의 히로시마’라고도 불리는 함천에 ‘한국 원폭피해자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박물관’을 설립함으로써 그의 운동이 일단락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존엄성이 다시는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반인륜적 범죄와 그것이 낳은 참상이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이를 기축으로 국내외 반전평화운동 세력들과의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형률은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맨 밑에 습관적으로 “삶은 계속되어야한다”는 문구를 끼워 넣곤 했는데, 이 말은 단순히 본인의 삶을 연장하자는 뜻이 아니었다.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원폭피해자와 그 후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핵으로부터 생명을 수호해야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 말 속에 담겨있다. 2005년에 사망한 김형률은 아직 원전의 문제에는 주목하지 못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김형률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그것이 핵무기이던, 원전이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한다. 어떠한 군사적, 기술적 이득도 우리의 생명만큼 소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반핵인권운동가 김형률의 유지이다.

6강» 6.14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의 길,
한국이 열었다

정혜경(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

6강(6.14) - 강제동원 이야기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의 길, 한국이 열었다.

정혜경¹⁾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설립을 통해 도덕적 우위에 선 한국

한민족은 일본이 저지른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에 동원된 아시아 민중의 하나이다. 현재 밝혀진 통계로는 연인원 800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전쟁에 동원되었다. 이들은 노무자로 군인과 군무원이라는 이름으로, 군수공장에서 군 시설물 공사장에서 탄광산에서 그리고 전쟁터에 동원되었다. 한반도와 일본, 남사할린, 만주, 태평양, 동남아시아 등 일본의 제국 영역에 동원되었다.

10대 남녀 청소년부터 60대의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남녀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었다. 노무자와 군무원들이 동원되어 공출품목을 생산하고 군 시설공사를 했던 작업장만 해도 1만개소가 넘는다.

지역	작업장 수	주요 직종
한반도	7,293개소	탄광, 광산, 항만운수, 군수공장, 군공사장, 토목건축공사장, 삼립채벌장
일본	3,642개소	탄광, 광산, 항만운수, 군수공장, 군공사장, 토목건축공사장
남사할린	76개소	탄광, 삼립채벌장, 토목건축공사장, 공장
태평양	112개소	광산, 군공사장, 항만운수, 토목건축공사장, 공장, 농장
동남아	4개소	공장(제철소), 농장
중국만주	79개소	탄광, 군공사장, 토목건축공사장, 농장
소계	11,206개소	

1) 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 제2조사과장

강제동원 추정치(중복 인원)

(단위 : 명)

노무동원	계		군인동원	계	
한반도 내 도내(道內) 동원	5,782,581	6,468,942	육군특별지원병	20,723	230,002
한반도 내 관알선	382,537		육군(징병, 지원병 등)	186,980	
한반도 내 현원징용	260,145		해군(징병, 지원병 등)	22,299	
한반도내 국민징용	43,679		합계	230,002	
해외 동원 (일본, 사할린, 타이완, 만주, 남양군도, 동남아 등 일본 제국 영역 전체)	724,727	787,646	군무원 동원		계
			한반도내 군무원	55,404	103,740
			남방지역 군무원	36,535	
			일본지역 군무원	7,214	
			중국지역 군무원	4,587	
일본 국민징용	62,784				
남방 국민징용	135				
합 계	7,256,507		합 계	103,740	
총 계	7,590,249				

- 자료 : 『2003년도 일제하 피강제동원자 등 실태조사연구 보고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내용 수정

1명이 노무자로 군무원으로 군인으로 중복 동원된 경우도 있고, 한반도 내에서 동원되었다가 다시 일본이나 남사할린 등으로 동원된 경우도 많다. 이렇게 수 백만명이 전쟁에 동원된 피해자이지만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일본이나 피해자인 한국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이후 개인의 보상청구권은 양국 어디에서도 책임지는 곳이 없었다. 1975년에 한국정부가 실시한 인적물적보상을 통해 8천552명이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뿐이다.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 개인의 지리한 소송은 거의 대부분 기각으로 마무리되었다. 돌아오지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된 이들에 대한 유해조사나 봉환도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인적인 차원의 봉환이 있었을 뿐이다. 일본정부 차원의 봉환도 유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저 한국정부관계자에게 공항에서 유골을 넘기는 정도였다.

한국사회가 '먹고살 만해지기' 까지 이런 상황은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물론 유족의 나이도 노령에 접어들 때 까지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 물꼬를 튼 것은 결국 피해 당사자들이었다.

2000년 법정을 계기로 새로운 21세기를 열고자 하는 국내 각계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으로 일본에서 조사관련 법 제정운동이 일어났으나 실현되지 못하자 국내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국내에서 제기되어 피해자단체, 변호사, 시민단체, 학계가 힘을 모아 특별법 제정운동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 국내에서 전개된 강제동원피해문제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일본 각지의 법정에서 제기된 관련 소송이 기각과 패소를 거듭하면서 한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문제에 대한 조사 및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수립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당한 강제동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 제국일본을 계승하고 있는 현재 일본정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으나 독립하여 민족국가를 수립한 한국 및 북한정부에도 2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9월 피해자단체(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연구단체,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진상규명모임을 발족하였다. 모임은 2001년 4월 24일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대표 김원웅 의원)'과 초당적인 차원에서 강제동원규명법 제정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5월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참여하였다.

2001년 5월 6일에 열린 제44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끝나지 않은 일제와의 전쟁' 패널에 참가한 연구자 일동은 한국정부와 국회에 대해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기구 설치"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 협정에 관한 일제의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장완익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01년 10월 12일 국회에 발의(대표발의자 김원웅 의원)되었다.

12월 11일, 시민사회단체는 법안의 국회 발의를 계기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이하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강제동원된 한국인의 피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 규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목표를 두었다.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집행단체로 5개 연구단체와 6개 피해자단체,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되었다. 발족 직후인 12월 19일 심포지엄 '구술자료로 복원하는 강제연행의 역사' 및 2002년 2월 4일, '한·미·일 연대 국회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위한 국회의원과 주요 사회인사 대상의 서명운동, 2002년 7월 27일부터 15일간 '평화지킴이들의 전국 순례'행사 등을 전개하였다. 매주 특별법추진속보를 발간하고 일본의 시민단체와 연대 활동도 전개하였다.

2003년 2월 28일에는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대표 김희선의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의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수집한 42만 명부를 일반에 공개하였고, 8월에 '피해자 국적포기운동'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였다. 특히 최

봉대변호사가 주도한 국적포기운동은 가장 영향력이 컸다. 국민이 국적을 포기하고 싶은 정도의 피 끓는 심정을 사회에 호소한 것이다.

또한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한일협정문서공개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법안은 비록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후 2004년 2월 13일 국회본회의에 부의되어 출석의원 175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서 가결 통과되었다.

2004년 3월 5일 제정 공포된 특별법(법률 제7174호)은 2007년 3월 23일 일부 개정(법률 제8311호)을 통해 진상조사 기간이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4년 이내'(법 제16조)로 연장됨으로써 위원회 운영기간도 연장되었다. 또한 2007년 12월 10일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669호)에 의해 설립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와 통합사무국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업무가 추가되었다. 그 후 2010년 3월 22일 제정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143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5호)에 의해 그 업무가 폐지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로 계승되었다.

법안대표발의자 김원웅 의원이 2001년 10월 12일 법안 발의 당시 밝힌 취지에 따르면, 특별법은 "건국 이후 최초로 한국 정부가 일제의 전쟁에 동원당한 자국민의 피해를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는 법"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녔다. 또한 법에 근거하여 발족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피해당사국이 스스로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역사상 기념비적인 정부기구이다.

현재 중국에 731부대나 남경대학살 현장에 기념관 등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강제동원 피해조사에서 유골봉환, 피해자 구제와 지원, 위령사업과 시민교육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전담하는 상설 정부기구로는 유일하다.

비록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143호) 제19조에 의해 존속기간(2012년 12월 31일까지)이 명시된 한시기구라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2004년 11월 발족 이후 7년간의 활동성과는 국내 피해자에 대한 위로를 넘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및 동아시아 평화 정착에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 한국정부 차원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작업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4.3.5 제정 공포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74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544호)에 의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한시)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

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특별법 제1조) 2004년 11월 10일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특별법 제3조 규정(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에 따라 설치되었다. 법이 규정한 위원회 업무는 피해 진상조사, 피해와 관련한 국내외 자료수집·분석 및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사료관 및 위령공간 조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등재 등이다. 조사범위는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시기까지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으로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이다.(법 제2조, 3조) 위원회는 특별법(법률 제7174호) 제16조 규정에 의해 2005년 3월 25일 진상조사 개시가 결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다.

○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진상조사이다. 진상조사를 통해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사실 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는 신청에 의한 진상조사와 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정한 직권조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진상조사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자료집 발간, 연구용역 진행 등이 포함된다.

2005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57건의 진상조사 신청을 받아 주제별 강제동원피해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 20권을 발간했다. 강제동원 생존자에 대한 면담기록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정리한 자료집 30권과 연구용역보고서 29권도 발간하였다.

○ 관련 기록 수집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것은 관련 기록이다. 기록물은 민간이 소장한 기록도 중요하지만 일본정부와 기업 소장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일본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간 일본정부와 기업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은닉해온 기록 중 군인군속공탁금 명부(2007년)와 노무자 공탁금명부(2008년==)의 확보는 한국정부의 가장 큰 성과이다.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봉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한일정부간 협의체를 통해 끊임없이 기록수집을 추진한 결과 이들 명부를 확보하여 미수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후생연금기록 조회도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는 군사우편저금기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 민간소장 기록(문헌, 박물관, 사진 등)의 수집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 주요기록물

수집기록물				생산기록물
				
명부	문서	사진	박물	피해조사서철

■ 소장자료 현황

(2009. 4월 기준)

구분	문서		명부		사진		박물	시청각		MF (CD)	도서
	사본	기증원본	사본	기증원본	기증	제출		일반	구술		
건수	3,342	263	197	57	562	511	113	362	2,163	27 (105)	3,168

■ 기록물 활용사업

동행자찾기	뉴스레터	전시회		자료집발간
2008~	2008.4~	2007	2008	2005~
				

○ 피해조사 및 지원금 지급

2005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회에 걸친 신청 접수를 통해 총 226,671건의 피해조사신청을 접수하였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669호)에 의해 위로금 등 지급 업무가 개시되었다.

특히 접수절차가 어려운 남사할린 지역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총 3차에 걸쳐 현지(남사할린 및 러시아)에 가서 직접 3천 500여건의 접수를 받고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크리스도교코스크 - 사할린 출장 2005년 8월 4일



유크노-사할린 출장 2005년 8월 23일

photo by happy sniper

이 때 자료수집작업도 병행하여 귀중한 자료 168점을 수집할 수 있었다.

종류	사진	보험 및 저금 관련	증명서류	편지
총계	168점	74점	22점	8점
1차	17점	54점	15점	7점
2차	151점	20점	7점	1점
주요 내용	피해자 본인 및 가족, 친구 들 사진	생명보험약관/보험증서/ 보험료영수수첩(保險料領 手帳)/저축예금통장/출자 증권/전시저축채권/정기 예금증서/국채저금통장/ 우편저금통장 등	포경부종업원신분증 명서/인감표/임산부수 장/피부양가족도항소 개장 등	동원지에서 가족에게보낸 편지/봉투/신 분 확인 의뢰 답장

○ 유해조사 및 봉환

2004년 12월 한일 정상간 합의에 따라 2005년 2월부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봉환 문제를 논의할 한일정무간 협의체가 발족하였다. 2010년 10월말 현재 국장급 수석대표자 회의(위원회 사무국장 vs. 외무성 심의관) 7회, 과장급 팀장급 실무협의 10회 개최되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현재 일본 내에 한국인 유골 2600여위가 보관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군인군속으로 사망한 조선인의 유골 중 일부인 1,147위가 안치된 일본 도쿄 메구로(目墨)구의 사찰, 유텐사(祐天寺) 유골 봉환을 위해 협상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8년부터 도쿄(東京) 유텐사(祐天寺)에 보관 중인 군인·군무원 유골 가운데 423위가 4차에 걸쳐 국내로 봉환되었다. 위원회가 명부에서 남한 지역의 본적을 확인한 후 유족들을 찾아 유골이 이곳에 안치된 과정을 전하고 희망자에 한해 국가 차원의 의전(儀典)을 통해 정중히 모셔오는 방식이다. 유족들은 일본과 한국에서 개최하는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고, 유골을 국립묘역인 망향의 동산에도 모실 수 있다. 물론 모

든 비용은 한일 양국 정부가 부담한다.

금년 중에는 노무동원자 유골봉환을 성사시키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유텐사 추도식 모습



한국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봉환추도식 모습(2009.7)

○ 사할린 묘지 실태 조사

위원회 설립 이후 성과의 하나는 유해조사 및 발굴 봉환이다. 이 사업이 갖는 의미는 강제로 동원된 이들의 귀환과 미귀환 문제라는 점이다. 자기 발로 걸어 나간 청장년들이 돌아오지 못한 점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지적하고 제대로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미귀환의 대표적인 지역이 남사할린이다. 강제동원으로 3만여명이 동원된 지역이고, 일본의 패전 당시에 4만 6천명이 억류되었지만 그들의 유해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영주귀국사업에 치중한 결과이다.



위원회는 남사할린 탄광지역 등 강제동원 피해자 집단매장 지역 및 공동묘지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강제동원 사망·행방불명자 관련 자료 확보 및 향후 사할린 전 지역 유골봉환을 위한 방향 수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할린 현지 집단매장지역 및 공동묘지 실태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에 앞서 기초조사('07, '08년) 및 연구용역사업('09년)을 실시했고, '10년 이후 예산 문제로 중단되었다가 2011년 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는 현재 홈페이지의 콘텐츠인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공동묘지 한인묘 찾기'(http://www.jiwon.go.kr/sahalin_finde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향후 56개소의 공동묘지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유골봉환도 병행 진행할 예정이다.

3. 향후 과제 : 동북아평화공동체의 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회는 “건국 이후 최초로 한국 정부가 일제의 전쟁에 동원당한 자국민의 피해를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는 법”에 근거하여 발족한 정부기구로서 피해당사국이 스스로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역사상 기념비적인 정부기구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동아시아의 4천만 민중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원자폭탄 피폭이나 도쿄대공습 등 본토 공습을 내세워 '가해국'에서 '피해국'으로 변신한 후 전쟁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정치가들의 망언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덧씌우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골리앗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했으나 속 시원한 대답은커녕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

그간 위원회가 이룬 성과는 단지 피해조사처리와 책자 발간, 유골봉환식 거행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피해자에 대한 위로를 넘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 정착에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강제동원피해문제는 일본의 침략전쟁에서 출발했다. 제국주의와 파시즘이 나온 산물이다. 그러므로 해결방안은 바로 동아시아 사회의 민주화와 평화공동체 구축이다. 반전평화 의식을 갖지 않으면 다시금 전쟁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사회의 민주화가 정착하지 않으면 언제든 강자의 논리로 약자를 침탈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의 토대를 닦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경제규모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없을 수 있으나 강제동원피해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일본 및 중국과 공유하고 타이완이나 동남아시아의 피해국과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어렵게 출범한 한국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은 제한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올해 연말로 문을 닫게 되어 있다. 그

렇다면 진상규명작업은 완료되었는가.

피해조사만을 볼 때, 피해자의 7%(실동원자 300만명을 대상으로 할 때)의 조사를 마쳤을 뿐이다. 유해조사 및 봉환은 물론 이제 물꼬를 튼 상태이다.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초는 위원회가 문을 닫은 이후 이어질 수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7년간의 성과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상황에 놓여 있다.

일본정부는 그간 강제동원에 대해 '인도적 차원'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위원회의 요구에 대응해왔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 속도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표적인 우익 정치가인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과 이시하라 도쿄도지사의 연대는 강화되었고, 독자적인 정치세력 배출을 위한 시스템까지 마련했다. 일본은 총선을 통해 이들의 의석수가 반이 넘을 것이며, 남은 의석수는 자민당과 민주당이 반분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정치 지형이 마련되었을 때, 역사문제에 대한 그들의 대응은 기존에 이룬 성과에 대한 전면 부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선언은 일본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미 한국에 위원회가 없어진 마당에 그들이 거칠 것은 더욱 없을 것이다.

한국이 위원회를 통해 닦은 기초는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다시금 '강제동원은 있었다'로 전환하기 위해 피해자와 유족들은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이미 유족의 연령대가 70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들을 위해 한국이 그리고 동아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첫째, 한국정부차원의 진상규명작업을 지속하는 일이다. 기한을 설정할 수 없는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의 발굴·수습·봉환, 한일협정에서 제외된 일본군 위안부·원폭·사할린 문제 등 미해결 과제,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자행된 사건·사고 진상(실태)조사, 후생연금을 위시한 미수금 자료 입수 등 일체의 가해사실을 빠짐없이 밝혀내는 작업을 중단없이 지속해야 한다. 일체의 가혹행위와 강제동원, 군위안부 피해, 유골방치 행위 등은 인류의 보편적 관습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후세에 역사적 사실과 진상을 정확히 알리고 교훈으로 삼게 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와 국민이 진정으로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할 때까지, 일본의 책임과 사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의 진실을 밝혀내고 규명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책무이다.

둘째는 한일 양국 우호세력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이다. 여기에는 한일 양국 의회의 연대 활동(관련 기록의 공개 및 발굴 실현, 연구조사 및 배상관련 법안 제정(일), 한일의원연맹을 통한 공동 대응, 의원 연구단체 설립, 공동현지조사 및 공동세미나 개최)과 일본 우호세력 연대 지속화(관련기록 발굴, 유골조사 및 봉환, 현지 조사, 시민교육 등 각 방면의 연대 지속화), 한·중·일 지식인의 연대(정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계 등의 역량을 결집해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체 설립), 한국 학계의 연구 활성화(관련 학문 분야 확대, 연구자 배출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일본정부와 기업의 성의를 촉구할 수 있다.

일본정부와 기업은 진정성을 토대로 관련 기록 제공은 물론,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조사 및 봉환, 사할린·한센병 환자·시베리아포로·BC급 전범 문제 해결, 교과서문제 해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사 활성화 등에 나서야 한다. 또한 평화 재단 설립을 위해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동아시아에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는 길은 이미 시작되었다. 위원회가 토대를 닦고 있고, 시민단체와 학계가 어깨를 곁고 있다.

2011.8.6. 한일양국의 연구자와 시민들의 연구단체인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http://cafe.naver.com/gangje>)가 발족을 하고, 뉴스레터 발간, 연구세미나 운영, 연 2권의 책(연구서와 대중서 등)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0.7.14. 광주의 작은 시민단체인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1945-815>. 이하 시민모임)은 2년간의 투쟁(미쓰비시 자동차 판매점 퇴출 운동 성공,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3보 1배 등)을 통해 근로정신대할머니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주)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대일과거청산운동 사상 최소의 일이자 일본기업 최초의 일이다. 현재 나고야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문제에 대한 협상은 3년째 접어들었다.

시민모임은 협상을 성공리에 이끌기 위해 일본의 소송단과 연대는 물론 ‘10만 희망 릴레이’운동을 벌여 성공했다. 이 운동은 10만명의 후원을 받아 협상자금을 마련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운동이다. 미쓰비시가 동원한 한인 강제동원 피해자가 약 10만명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 운동에 참여한 시민은 10만명을 훌쩍 넘었다.

시민모임은 이에 그치지 않고 광주시의회에서 근로정신대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19대 총선을 맞아 후보자 대상 강제동원 피해문제 정책 설문을 받아내기도 했다.

시민모임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모임의 진정성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명확한 운동의 방향 설정, 국회(이용섭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의 지원, 일본 시민단체의 연대, 위원회의 진상조사 추진 및 자료 제공, 시민참여도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있기에 힘을 낼 수 있었다.

시민모임의 사례는 대일청산운동사에서 특기할만하다. 광주시의 조례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미쓰비시를 비롯한 전범기업의 입찰제한(이명수 의원)으로 이어졌다. 광주의 작은 시민단체인 시민모임은 평화로 가는 길, 동아시아가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는 길의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한일시민사회가 따라야 할 뜻대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